

2016 보호종결아동
주거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주거권 실태조사

연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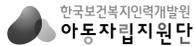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연구자

이정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이택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이 보고서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CONTENTS

CHAPTER 01 서론 /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0
제3절 연구 추진체계 모형	12

CHAPTER 02 국내 보호종결아동 주거지원제도 실태 / 13

제1절 국내 보호종결아동 실태	14
제2절 국내 주거지원제도 실태	18

CHAPTER 03 보호종결 주거권 실태조사 방법 / 33

제1절 양적조사 연구방법	34
1. 조사대상	34
2.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34
3. 분석방법	35
제2절 질적조사 연구방법	36
1. 조사대상	36
2.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36
3. 분석방법	38

CHAPTER 04 보호종결 주거권 실태조사 결과 / 41

제1절 양적조사 결과	42
제2절 질적조사 결과	93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00

CHAPTER 05 결론 / 103

CHAPTER 06 참고문헌 / 107

CHAPTER 07 부록 / 109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CHAPTER

01



보 호 종 결 아 동 주 거 지 원 제 도 개 선 을 위 한 주 거 권 실 태 조 사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제3절 연구 추진체계 모형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주거권은 모든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임과 동시에 인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생존하고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기초적인 요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거에 관한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거권이란 국가구성원으로서 적정한 주택에 살아야 할 권리를 말한다.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이며 헌법 제35조 제3항에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주택법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첫째,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둘째, 주택시장의 원활한 기능 발휘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셋째, 주택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넷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해 놓았다.

안정된 생활의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는 법 제정 및 다양한 주택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가 주택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의 주거 수준(dwelling level) 향상에 있다. 하지만 2010년 주거복지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인구 중 10.6%는 최저 주거기준미달이며,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곤란을 겪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주거빈곤’이라는 신조어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주거빈곤으로 전락하는 가장 큰 원인은 소득에 비하여 임대료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나타났다(박신영, 2012).

한국 사회에서 적절한 주거를 확보하고 정착하는 것은 해결하기 쉬운 성질의 문제가 아니며, 이러한 주거 문제는 청년세대에 보다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다(이봉주, 2014). 이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종사자 수 100인 이상 국내 기업 2,26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상반기 기업체 신규인력수요실태조사」에 잘 나타나고 있다. 대졸 신입사원 평균연령은 남성 33.2세, 여성 28.6세로 나타났고, 청년층이 주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에 취직했다고 생각하는 시기는 29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대졸 취업자를 평균 28.6세로 간주한다면, 20세~28세까지는 대학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상황이거나, 취업자이더라도 괜찮은 일자리를 위해 이직 등을 경험하는 경제적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거경제불안은 대학생에게도 나타났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2014년도 대학생 원룸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이 주거에 부담하는 한 달 평균 월세는 42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월세보증금의 평균은 1,418만원으로 나타났다. 월세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17.8%(전체 1,006명), 부모가 부담하는 경우가 82%로 부모가 부담하는 경우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월세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응답자 중 72%는 전세 및 월세비용에 대한 부담 및 주거불안이 매우 높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다양한 이유로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아동양육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시설에서 자란 아동들의 경우에는 만 18세가 되면 아동복지법¹⁾에 근거하여 보호가 종결된다. 앞선 연구들 통해 일찍 자립을 경험해야하는 보호종결 아동들의 경우에는 그 불안이 더욱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다양한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다. 보호종결 이후, 아동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문제는 주거문제, 생활비 및 학비마련 등의 경제적 문제, 심리적 부담감, 외로움 순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아동자립지원단, 2012). 그 중 주거문제는 UNICEF (2013) 보고서에서 명시한 아동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5가지²⁾ 질적 측정 수준에서도 물질적 문제, 주거와 환경과 같은 문제와 결부되는 것으로 사료된다(조춘범, 김미숙, 2016).

보호종결아동의 자립 및 사회적응 현황 연구(강현아, 신혜령, 박은미, 2009)에서는 보호종결아동의 주거형태를 살펴보았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월세

1)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제15조항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보호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2) UNICEF(2013) 5가지 영역 삶의 질 측정: 물질적 수준, 건강과 안전, 교육, 행위와 위험, 주거와 환경



거주자(30.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에 1회 이상 이사를 한 비율도 35.5%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종결 이후, 마땅히 지낼 곳이 없어서 노숙을 경험하였다는 비율도 8.1%로 나타나 보호종결 후, 아동들이 경험하는 주거 불안정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거불안정성은 정선욱(2010)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월1회 또는 1년에 1~3회 이사를 경험한 보호종결 아동의 비율이 전체의 32.6%로 나타났다. 주거형태의 경우에도 월세, 고시원, 쪽방과 같은 주거형태에 거주했거나, 하고 있다는 응답이 40%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앞서 강현아 외(2009)의 결과를 다시 한 번 뒷받침하며, 보호종결 아동의 주거 불안정성의 심각성을 시사하였다.

이는 2014년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보호종결아동 1,080명의 주거현황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퇴소 이후, 주거와 관련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29.1%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와 관련한 아동개인부담 비율이 70.9% 수준으로 나타났다. 퇴소 아동 중 38%는 첫 주거지로 기숙사, 고시원 또는 월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종결아동의 주거지원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보호종결 직후 사용한 모든 지출비용을 살펴보면, 주거비용이 42.3%로 가장 높았고, 평균 585만원을 주거마련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호종결 시,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자립정착금의 평균 금액인 393만원보다 높아, 주거마련을 위한 아동부담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5년 이후, 아동복지사업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던 사업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되며, 지역에 따라 보호종결 아동들이 겪는 부담감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지성(2007)의 연구에서는 사례조사방법을 통해 아동양육시설 보호종결아동의 생활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서도 역시 퇴소 이후, 주거지와 관련한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하였다. 특히, 주거비용이 부담이 되어 친구 혹은 시설선배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보호종결아동의 주거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시설, 한국토지주택공사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지원, 자립형 그룹홈 등 다양한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살펴보면, 먼저 자립지원시설은 현재 전국 12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보호종결아동에게 일정기간 동안 숙소를 제공하고, 안정된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둘째, LH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을 통해 매년 약 350명 정도의 보호종결아동이 전세주택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에서는 자립형 그룹홈을 운영 중이며, 수용인원은 45명이다.

하지만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는 몇 가지 한계점들을 갖고 있다. 첫째, 자립지원시설과 서울특별시 자립형 그룹홈의 경우, 입소대상이나, 출신 지역 등의 제한이 있으며, 매년 배출 되는 퇴소아동 수³⁾에 비하여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지원은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신청연령이 만23세로 학업 등의 사유로 인해 시설에서 연장보호를 받고 퇴소하는 아동의 경우, 신청시한을 놓칠 수 있다는 한계가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들에서 나타난 보호종결아동의 주거와 관련된 제반실태를 진단하고, 주거문제가 보호종결 아동에게 미치는 다양한 영향력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보호종결아동 주거권 실태에 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정책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2014년 보호종결아동(보건복지부, 2014): 아동양육시설 1,008명, 공동생활가정 80명, 가정위탁 1,082명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시설퇴소 및 위탁종결 주거권 관련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과거의 주거경험을 적실성 있게 반영하는 실태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거권 관련 실태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가지 연구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시설퇴소 및 위탁종결 주거권 실태 설문 조사

시설퇴소 및 위탁종결 대상 주거권 실태조사에서는 만 18세 이상 만 28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1> 주거권 실태조사 문항

영역	문항	
연구 및 개인정보 동의	개인정보수집·이용·활용 동의서(연구동의서 포함)	
주거실태	현재	주거유형, 주거위치, 주거면적 및 구조, 주거계약기간, 주거상태, 주거시설종류와 사용형태, 주거환경, 주거자금, 주거임차료, 임차료 부담, 부채, 이사계획, 이사 이유, 이용한 주거복지서비스, 주거지원 필요성, 필요서비스종류, 기타의견
	과거	주거유형, 주거위치, 주거면적 및 구조, 주거계약기간, 주거상태, 주거시설 종류와 사용형태, 주거자금, 주거임차료, 주거임차료 부담, 거주이동횟수, 이사이유, 보호종결 이후 주거지이동 히스토리
신체 및 우울	주관적건강상태(3문항), 우울척도(14문항) ⁴⁾	
일반적 사항	성별, 연령, 현주소지, 최종학력, 보호종결년도, 시설보호기간, 보호종결 당시 상황, 결혼상태, 동거가족, 집구하는 방법, 의료보장형태, 현재사항, 월평균소득	

2. 주거경험 면접조사

주거경험에 관하여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 질문은 다음의 표와 같다.

4) 배종진, & 박현철. (2014). 운동이 노인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 53(3), 549-557. (일부발췌 및 수정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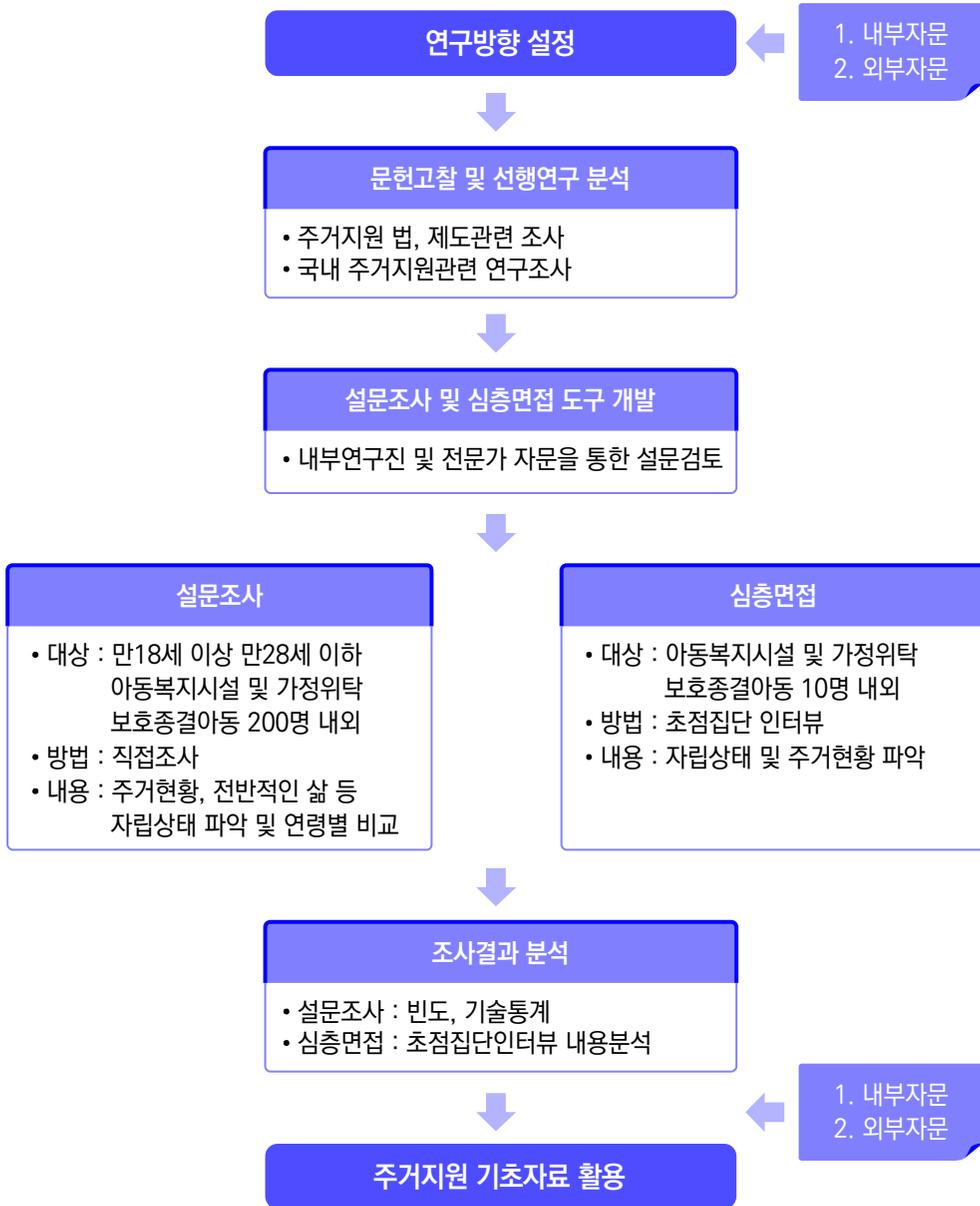
〈표 1-2〉 주거권 실태조사 면접 문항

영역	문항
일반적 사항	성별, 생년월일, 현 거주지, 최종학력, 보호종결년도, 보호종결 당시 상황, 시설생활기간, 현재 상황
심층면접 질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 주거형태 2. 과거 주거형태 3. 향후 주거계획 4. 이용하고 있는 주거관련 서비스 5. 사회적 관계 및 교류하고 있는 사람 6. 기타



제3절 연구 추진체계 모형

본 연구의 연구수행 체계도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1-1] 연구수행 체계도

CHAPTER

02



보 호 종 결 아 동 주 거 지 원 제 도 개 선 을 위 한 주 거 권 실 태 조 사

국내 보호종결아동 주거지원제도 실태

제1절 국내 보호종결아동 실태

제2절 국내 주거지원제도 실태

국내 보호종결아동 주거지원제도 실태

제1절 국내 보호종결아동 실태

1. 위탁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현황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자료에 의하면 위탁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현황은 <표 2-1>과 같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가정위탁보호 아동 수는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15년 기준 대리양육가정의 세대수는 6,944세대(아동수 9,127명), 친인척 위탁가정의 세대수는 2,927세대(아동수는 3,556명), 일반 위탁가정 세대수는 835세대(아동수 1,045명)로 나타났다.

<표 2-1> 위탁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현황

단위 : 세대, 명

구분		유형			합계
		대리양육가정	친인척 위탁가정	일반 위탁가정	
2010	세대수	7,849	3,365	906	12,120
	아동수	10,865	4,371	1,123	16,359
2011	세대수	7,463	3,351	816	11,630
	아동수	10,205	4,260	1,021	15,486
2012	세대수	7,230	3,037	763	11,030
	아동수	9,732	3,831	939	14,502
2013	세대수	7,294	3,086	789	11,169
	아동수	9,776	3,843	977	14,596
2014	세대수	7,162	3,089	826	11,077
	아동수	9,550	3,816	1,019	14,385
2015	세대수	6,944	2,927	835	10,706
	아동수	9,127	3,556	1,045	13,728

자료: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2016

2. 아동양육시설수 및 보호아동현황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자료에 의하면 아동양육시설수 및 보호아동현황은 <표 2-2>와 같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시설 수용자 수는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15년 기준 아동양육

시설 입소자는 1,360명, 퇴소자는 1,976명, 연말 현재 수용자는 12,821명으로 나타났다.

<표 2-2> 아동양육시설수 및 보호아동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시설수	입소자	퇴소자	연말 현재 수용자
2010	238	1,983	2,435	15,787
2011	242	2,015	2,489	15,313
2012	243	1,996	2,609	14,700
2013	243	1,703	2,334	14,038
2014	242	1,667	2,268	13,437
2015	243	1,360	1,976	12,821

자료: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2016

3. 아동자립지원시설수 및 보호아동현황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자료에 의하면 아동자립지원시설수 및 보호아동현황은 <표 2-3>과 같다. 아동자립지원시설수는 12개소 수준이 유지되었으며, 2015년 기준 입소자는 113명, 퇴소자는 122명, 연말 현재 수용자는 243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별로 시설수를 살펴보면 서울에 3개소, 대구에 2개소, 부산,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에 각각 1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아동자립지원시설수 및 보호아동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시설수	입소자	퇴소자	연말 현재 수용자
2010	12	103	130	235
2011	12	126	112	249
2012	12	109	102	256
2013	13	125	131	250
2014	12	115	113	252
2015	12	113	122	243

자료: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2016



[그림 2-1] 지역별 아동자립지원시설수

4. 아동공동생활가정수 및 보호아동현황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자료에 의하면 아동공동생활가정수 및 보호아동현황은 <표 2-4>와 같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아동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수는 점차 증가하였고, 2015년 기준 보호 아동수는 재학별로 0~7세는 352명, 8~13세는 850명, 14~16세는 652명, 17~19세는 653명, 20세 이상은 87명, 기타는 42명으로 나타났다.

<표 2-4> 아동공동생활가정수

단위 : 개소, 명

구분	시설수	보호아동 재학별					기타	합계
		0~7세 (미취학)	8~13세 (초등)	14~16세 (중등)	17~19세 (고등)	20세 이상 (대재)		
2010	416	195	894	543	388	42	65	2,127
2011	460	254	843	619	402	51	72	2,241
2012	489	291	848	682	481	50	86	2,438
2013	480	280	884	670	546	59	42	2,481
2014	476	300	878	661	640	79	30	2,588
2015	480	352	850	652	653	87	42	2,636

자료: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2016



제2절 국내 주거지원제도 실태

1. 주거지원제도 개념

주거지원제도란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단순한 시장원리의 경제재에 대한 주택수요만이 아닌 인간생활에 필요한 기본욕구인 주거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사회적 개념의 서비스로 정의되고 있다. 경제재로서의 주거서비스는 주택을 가구라는 주체가 주거서비스를 소비하는데 있어 객체로 파악하며, 주택의 가격은 재화로서의 주택과 주택이 제공하는 주거서비스가 혼합되어 그 경제적인 가치가 평가된다. 사회재로서의 주거서비스는 주택과 주거서비스를 정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없어선 안 될 필수재로 보장한다. 또한 순수한 경제 원리와 경제정책만으로는 만족스러운 해결이 어려운 기본적·필수적 경제재로서 사회의 생산력에 기여하는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윤주현 외, 2005).

적절한 주택은 가구의 독립적인 생활의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함에도 실제 정책의 영역에서는 주거문제와 연계된 서비스의 경우 사회서비스에서 비중 있게 다루이지 못했다. 그러다 1990년대 이후 영국 등에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주거지원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연계를 모색하는 논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주거지원서비스가 주목을 받게 된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국토연구원, 2014).

첫째,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자, 기타 주택 관련 기관 등이 점차 전통적인 주택분야를 넘어서 입주가구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활동도 자신들의 업무로 삼기 시작했으며, 이런 경험과 성과가 축적되면서 주거지원서비스로 공식화·체계화되기에 이르렀다. 둘째, 장애가 있거나 고령인 가구원 등은 전문적인 시설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기존 관념의 변화를 배경으로 탈시설화에 따른 지역사회 돌봄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지역사회 돌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적절한 주거생활이 보장되어야 했으며, 그 일환으로 주거지원서비스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남원석 외, 2010: 국토연구원, 2014에서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주거지원서비스는 주거문제와 연계된 사회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경우 주거지원서비스를 자신에게 적절한 주택을 확보 또는 유지함으로써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독립적인 생활은 단순히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에서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까지 포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가구가 스스로의 역량을 발전시켜 지역사회에 정착 또는 융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향점을 두고 있다(남원석 외, 2010 재인용).

주거지원서비스는 광의와 협의의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겠다. 먼저 광의의 서비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을 총망라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협의의 주거지원서비스는 ‘서비스’라는 비물질적 개념에 충실하여 물리적인 주택공급 등을 배제하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협의의 주거지원서비스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보제공 등 기존 정책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지역사회에서 주거안정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무형의 지원에 초점을 두게 된다. 또한 주거지원서비스를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주택에서의 주거안정 또는 적절한 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연성적인 정책수단’으로 정의하였다.

2. 주거복지 개념

주거복지 개념에 대하여 일반화된 정의는 없으며, 연구자와 연구목적에 따라 조작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주거복지 개념을 살펴보면, 최은희 외(2008)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주거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주거서비스로 주거복지를 정의하고 있다. 남원석(2007)과 김영태(2006)는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주거소요에 부합하는 적정수준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되, 소외됨이 없이 공동체 생활을 적극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김혜승(2007)과 김상균(1987)은 기본욕구 충족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 현금 및 현물 등의 서비스, 법률 혹은 활동이며,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한 체계로 정의하고 있다. 우용태(2012)에 따르면, 주거복지는 국가를 위시한 공공부문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모든 개별가구가 누릴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법(제3조, 7조, 76조)과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2조)에 주거복지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주거복지의 명확한 개념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을 구성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의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하여 ‘주거’부문이 사회보장이나 사회서비스의 하위영역에 포함됨을 지적하고 있다. 즉,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는 이미 주거복지라는 용어와 개념이 사용되어 왔고 실제적으로 주거복지 정책과 제도,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한국주거학회(2007)에서는 주거복지에 대한 개념을 개별가구가 기존의 주거관련 제도를 통하여 기본적인 주거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될 때,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조직화된 활동의 총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연구 동향을 볼 때 과거에는 주거복지 개념을 개인이 시장경제 하에서 자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기본적인 주거가 가능하도록 직접 국가가 개입하는 영역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보다 개념과 범위가 확장되어 보편적인 주거복지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협의의 주거복지는 서비스의 객체(수혜대상자)를 국민의 일부로 제한하여 이들의 기본적 주거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금전적 지원 및 기타서비스를 의미한다. 광의의 주거복지는 전체 국민의 주거측면에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집합적 책임을 뜻한다(김혜승, 2007).

주거복지의 범위를 물리적 공간과 주거환경으로 나누어 구분하는 경우, 좁은 의미의 주거복지의 범위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주택에 초점을 맞춰 물리적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력하는 것이다. 주택의 양적 공급을 확대하거나, 전기, 상·하수도, 도로 등 편의시설과 서비스의 공급을 통해 생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임대료 지불능력 및 자가 구입능력이 없거나 낮은 사회적 약자를 주거 빈곤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장세훈, 1999).

광의의 주거복지의 범위는 물리적 주거공간보다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일상 생활, 즉 주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광의의 개념은 물리적 주거환경의 문제도 포괄하지만, 그보다 사회·문화적 주거환경의 문제에 더 주목하여 보다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이웃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참여와 협조를 통해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형성해서 사회·문화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의미한다(진건욱, 2012).

3. 주거복지 특징

1) 주거복지 역할

주거지원서비스는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주거, 복지, 보건 서비스의 필요는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주거, 복지, 보건 서비스는 어느 하나가 부족한 경우 다른 것에서도 문제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이 협력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보건과 복지는 비교적 협력이 강하지만, 주거는 중요한 협력 주체라고 여겨지지 않았다. 그런데 주거 분야의 협력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거를 제공하는 조직들은 다른 서비스가 충족되지 않아서 혹은 필요한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아서 문제를 겪어왔다.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는 주거 제공을 통해서 보다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기관들의 협력적인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주거 분야의 필요성도 확인되고 있으며, 주거 분야의 개입이 상황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적절한 주거가 제공되면 아이들의 태도도 달라지고 부모들이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기도 한다.

주거지원서비스의 역할은 취약집단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용자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면, 서비스에 대한 필요는 없어진다. 그래서 주거지원은 단기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가능한 단기적인 지원을 통해 독립적인 생활 능력과 조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주거지원서비스의 특징이다.

주거지원서비스의 핵심적인 영역은 거처를 마련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 주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생활 방식 등을 익히기 위한 지원 등이다.



주거지원서비스는 새로운 제도를 고안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자원을 잘 연결시키는 것이다.

2) 주거지원서비스 종류

최근 사회복지에서 지역사회보호가 강조되며 재가복지서비스 등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조한다. 그러나 주거지원서비스와 같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주거지원서비스는 주거복지와 직접 관련되는 독특한 내용의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하고 있다(남기철, 2011; 국토연구원, 2014). 이와 유사하게 서종균(2009)도 주거지원 서비스는 다른 사회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은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의 전통적인 물리적인 주택과 관련이 깊은 서비스와 구분되고, 대인서비스 영역과도 구분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Bennet(2005)은 일반 사회서비스와 주거지원서비스를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주거서비스이다. 주거서비스의 성격은 주택이나 기타 시설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주요서비스로는 주택개조, 주택 장치서비스, 주택개량서비스, 커뮤니티 알람서비스 등이 있다. 둘째, 주거지원서비스는 커뮤니티에서 주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다. 주요서비스는 주택에 생활할 수 있도록 갖추고 유지하기, 가사 및 생활기술 개발, 재정관리 및 보조금 신청, 기타 서비스와 관련한 상담, 대변(代辯), 접근 및 연락, 심리적 지지와 카운슬링, 사회적 접촉과 활동 만들기, 건강 및 복지를 위한 수퍼비전과 모니터링, 주택의 개량 및 수선제공에 대한 상담, 커뮤니티 알람 제안 등을 제공한다. 셋째, 대인케어는 가사 및 일상보호 서비스이다. 주요서비스는 대인케어, 일어나기, 잠자리 들기, 목욕 돕기, 가게 및 홈케어, 청소, 세탁, 쇼핑, 집안일등이다. 넷째, 보건케어는 간호이다. 약물처방, 옷 갈아입히기, 전문적인 치료, 재활 및 치료케어 등을 제공한다(서종균,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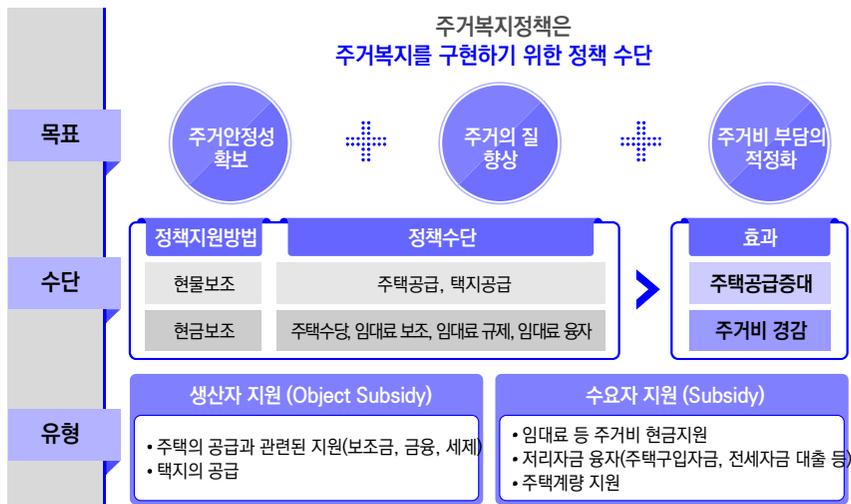
서안나(2010)는 주거지원서비스에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주거 정착과 유지를 위한 지원이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전통적인 주거서비스의 영역이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다양한 분야의 지원 서비스를 연결시키고, 예외적으로 서비스의 공백에 대해서 직접 대응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기관들이 의사소통을 하면서 협력적으로 이용자들의 필요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때, 주거지원서비스는 변화하는 이용자의 필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잘 대응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가 지역사회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자립적인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한 내용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 가운데 필수적이고 그리 복잡하지 않은 것은 주거지원서비스로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주거복지 정책 현황

우리나라 주거복지는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을 목표로, 국민 모두가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는 지원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은 주거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이는 주거 안정성 확보, 주거의 질 향상, 주거비 부담의 적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을 지원하는 방법은 현물보조와 현금보조로 나뉘어진다. 첫째, 현물보조는 주택공급 및 택지공급을 제공하는 것으로 주택공급을 증대하는 효과를 보기 위함이다. 둘째, 현금보조는 주택수당, 임대료 보조, 임대료 규제, 임대료 용자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주거비 경감의 효과를 보기 위함이다.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 체계도이다.



자료: <https://www.myhome.go.kr>

[그림 2-2] 국내 주거복지정책 체계도



<표 2-5> 소득계층별 주요지원사업

1~2분위	3~4분위	5~6분위	7분위이상
임대료 부담능력 취약계층	자가구입능력 취약계층	정부지원 자가구입 가능계층	자력으로 자가구입 가능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구임대주택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소형 국민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원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임대주택 집중 공급 불량주택 정비 활성화 전월세자금 지원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형주택 자가공급 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기능에 일임 모기지론 등 금융지원

(1)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관련 근거법은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해당이 된다. 지원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주거급여의 신청은 수급권자의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만 신청한다. 급여신청의 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자료: <https://www.myhom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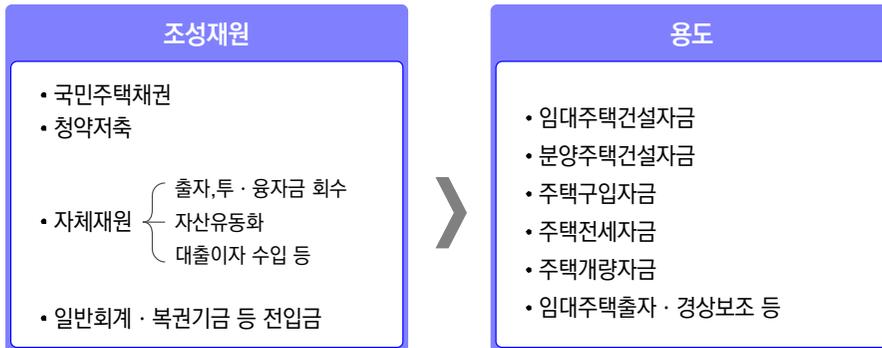
[그림 2-3] 주거급여 신청 절차

(2) 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임대주택의 종류는 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이 있다. 먼저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로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다. 이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건설·임대하는 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임대하는 주택,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 임대하는 주택 등이다.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민간이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이며 이는 준공공임대주택 10년, 그 밖의 매입임대 5년 등의 임대 의무기간이 있다.

(3) 주택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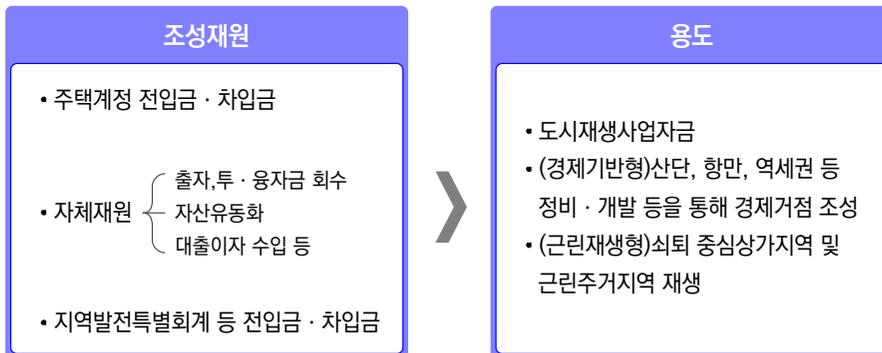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내 집 마련 및 전월세자금을 지원(보증)하고, 서민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주거복지정책사업이다. 주택도시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주거복지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택계정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용자금 회수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한다.



자료: <https://www.myhome.go.kr>

[그림 2-4] 주택금융 자금 기반도

도시계정은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차입 등으로 조성한 자금을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도시재생사업에 지원한다.



자료: <https://www.myhome.go.kr>

[그림 2-5] 도시계정 자금 기반도

이는 임대주택 공급 촉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및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한다. 민간자금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본격화하며, 민간 불량주택 개량 및 소규모 임대주택 건설 금융지원을 통한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 상업시설 경관정비 및 주민 자생조직 활성화, 도심 복합시설 등 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

(4) 긴급주거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거주할 장소나 거주할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거주할 장소나 거주 비용이 필요한 사람이며, 지원내용으로는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이다. 신청방법은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위기사유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이다. 선정기준은 <표 2-6>과 같다.

<표 2-6> 긴급주거지원 선정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00%	617,281	1,051,048	1,359,688	1,688,329	1,976,970	2,265,600	2,594,251
185%	1,241,870	1,944,439	2,515,423	3,086,400	3,657,395	4,228,379	4,799,364

자료: <https://www.myhome.go.kr>

재산기준은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다. 금융재산(저축액) 기준은 7백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대도시 1~2인 365,800원, 3~4인 607,800원, 5~6인 801,700원, 중소도시 1~2인 239,800원, 3~4인 399,600원, 5~6인 526,700원, 농어촌 1~2인 138,000원, 3~4인 229,900원, 5~6인 302,700원이다. 신청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자료: <https://www.myhome.go.kr>

[그림 2-6] 긴급주거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5)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쉼터 및 부랑인 복지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이다. 단, 신청 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의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이 가능하다. 또는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 등이다. 지원대상지역의 경우 입주희망지역은 제한이 없다. 임대기간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단, 2년 단위,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다. 유형별 자격요건으로는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노숙인 쉼터·부랑인복지시설 거주자는 지역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되고,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소득 등 재산요건은 세대주 및 세대원이 전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소득, 토지, 자동차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표 2-7>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기준

가구원수	50%	100%
3인이하	2,408,330원	4,816,665원
4인	2,696,570원	5,393,154원
5인이상	2,737,700원	5,475,403원

자료: <https://www.myhome.go.kr>

주거지원 유형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국민임대주택 등이다. 주거지원 유형과 지원 절차는 다음 <표 2-8>과 <표 2-9>와 같다.

<표 2-8>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유형 및 사업내용

유형	사업내용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입주자 관리,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민간복지단체 (주거복지재단이 선정)를 통하여 주거지원
국민임대주택	정부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건설한 주택 (60㎡이하규모)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 비닐하우스거주자, 범죄피해자만 해당

자료: <https://www.myhome.go.kr>

<표 2-9>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지원절차

주거지원신청	주거지원을 원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주거지원 신청
2. 주거지원 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	각 시군구의 장(법무부장관)은 입주자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LH 등)에게 주거지원 요청
3. 자격확인 및 입주자 선정	LH는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최종 입주자 선정 및 통보
4. 입주희망주택 물색	입주대상자는 전세금 회수가 가능한 주택을 물색하여 LH에 통보
5. 전세계약 가능여부 검토	LH는 대상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저권확보를 위한 권리분석 후에 전세계약 가능 여부를 결정
6.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순위명부 등에 따라 주택을 결정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7. 입주 및 전입신고	입주대상자는 전세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입주 후, 해당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완료(사업시행자)자는 입주자 명단 해당구청에 통보

자료: <https://www.myhome.go.kr>



(6) 청년주거지원

① 행복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이 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이 최대 6년이며, 전용면적이 45㎡이하, 임대료는 시세의 60~80%수준이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지며, 2017년까지 총 14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행복주택의 장점은 입주자 맞춤형 설계, 가까워진 회사, 학교, 다양한 편의시설, 편리한 교통, 저렴한 주거비 등이다.

② 대학생 전세임대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2년 단위 3회까지 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다. 공급면적은 60㎡이하 주택을 지원하며, 수도권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그 외 4,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대학소재 지역내(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 지역)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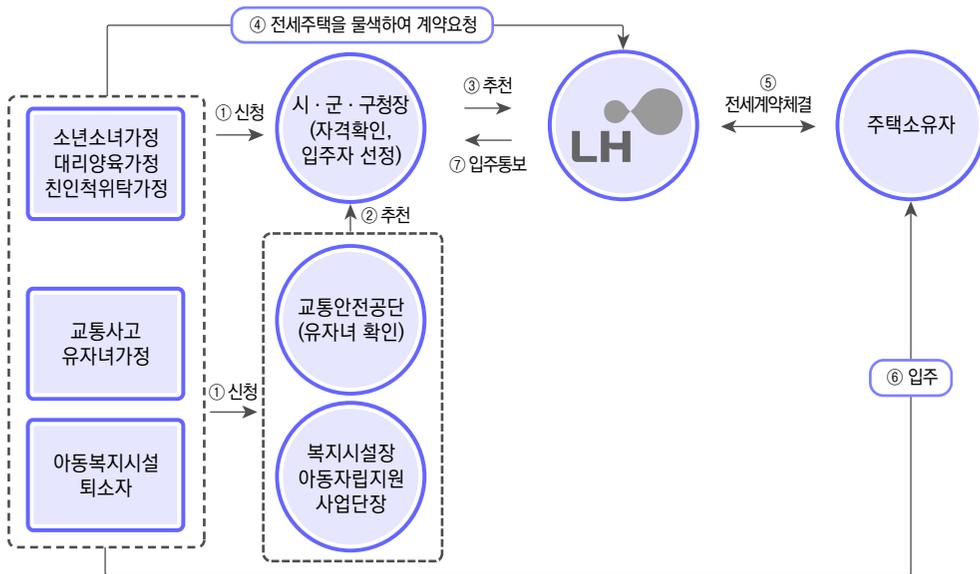
③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취업준비생 혹은 사회초년생이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이다. 사회초년생은 취업 후 5년 이내로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이다. 본 사업의 장점으로는 금리 연 1.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적용이며, 대출한도는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3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1년 단위로 총3회 연장, 최장6년까지 가능하다.

④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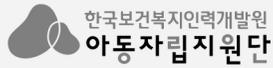
사업 대상은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 대리양육·친인척위탁가정 보호를 받는

18세 미만의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및 퇴소한 자로서 만 23세 이하인 자이다. 단, 퇴소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자립지원단장이 추천하는 자이다. 지원 조건은 만 20세까지 무이자 지원이 가능하며 만 20세 이후에는 이자(연1~2%)를 부담하되 대상가정의 지원 자격(소득, 주택소유여부 등)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의 만료 시, 기존주택전세임대로 연계가 가능하다. 지원한도는 국민주택규모 85㎡이하 주택이다. 단, 1인 단독세대는 60㎡이하이다. 지원 금액은 수도권 8천만원, 광역시 6천만원, 기타지역 5천만원이다. 다음 그림은 지원절차이다.



자료: <https://www.myhome.go.kr>

[그림 2-7] 소년소녀가장 전세주택 지원절차도





보 호 종 결 아 동 주 거 지 원 제 도 개 선 을 위 한 주 거 권 실 태 조 사

보호종결 주거권 실태조사 방법

제1절 양적조사 연구방법

1. 조사대상
2.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3. 분석방법

제2절 질적조사 연구방법

1. 조사대상
2.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3. 분석방법

보호종결 주거권 실태조사 방법

제1절 양적조사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실태조사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아동을 대상으로 총 2주간(2016.10.07.~2016.10.20.) 진행되었다.

2.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본 실태조사는 주거권 관련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시설퇴소 및 위탁종결 아동의 주거실태를 성별, 지역별, 현시점과 과거시점, 고연령 집단(만 24세~만 28세)과 저연령 집단(만 18세~만 23세)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구글 드라이브(Google Drive)에서 제공하는 Google 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 대상자의 모바일에 설문지 URL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만 18세~만 28세 대상자 총 234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후,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 중 무응답이거나 오류가 있는 케이스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60명의 설문지를 코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실태조사에 활용된 설문 문항의 내용은 크게 주거실태, 신체 및 우울, 일반적 사항으로 구성되었고, 각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주거실태

주거실태는 보호 종결 아동의 객관적인 주거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거유형, 주거면적, 주거상태 만족도, 거주지 이동횟수, 필요한 주거지원 서비스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었다.

2) 신체 및 우울

신체 및 우울은 보호 종결 아동의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 건강상태 및 우울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평정되었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1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나의 건강상태는?’, ‘같은 나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신의 건강상태는?’ 등 총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울 정도는 ‘인생이 텅 빈 느낌을 갖습니까?’, ‘최근 활동이나 흥미가 떨어졌습니까?’, ‘가끔 무기력하다고 느끼니까?’ 등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3) 일반적 사항

일반적 사항은 주거실태 외의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현황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별, 연령, 최종학력, 월평균소득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었다.

3. 분석방법

설문지 문항 중 주거상태에 대한 만족도, 주거 관련 자금 마련 방법, 주거 면적, 필요한 주거지원 서비스 등의 문항은 집단별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필요한 경우 각 집단별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외의 설문지 문항들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모든 분석은 SPSS 20.0을 활용하였다.



제2절 질적조사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실태조사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에서 주관하는 ‘시설퇴소 및 위탁종결 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지원대상자 중 연구의 목적 및 방법에 동의하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2009년 이후, 시설퇴소 및 위탁종결 한 자
- 연구의 목적 및 계획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 만18세 이상이며, 2016 시설퇴소 및 위탁종결 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2.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본 조사는 연구참여자로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구술 인터뷰와 주거지 현장 조사를 통하여 주거현황 등을 파악하고자 1:1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연구대상자들에게 최소 1회기 최대 3회기 정도의 구술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가정 또는 직장, 본 지원단 사무실 방문등을 통한 직접면접방식으로 진행하였다.

1) 연구방법

-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사전동의를 구한뒤, 주거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가정으로 직접 방문을 통한 면접을 실시하였다.
- 방문을 통해 현재 주거지에 대한 사진촬영과 녹음, 현장노트 등을 활용하여 기록하였다.
-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구조화된 설문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였다.
- 2회기 이상의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추가적으로 전화면접 또는 대면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보완하였다.

2) 자료수집 내용

사례조사 과정에서 진행한 자료수집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면접 프로토콜

항목	내용
일반적 사항 (구조화된 설문방식)	성별, 생년월일, 현거주지, 최종학력, 보호종결년도, 보호종결당시 상황 시설생활기간, 현재 상황
심층면접 질문 (반구조적 설문방식)	1. 현 주거형태 2. 시설퇴소 이후, 주거현황 3. 이용하고 있는 주거관련 서비스 4. 사회적 관계 및 주로 교류하는 사람 5. 시설퇴소 후 시설과의 관계 6. 향후 주거계획 7. 기타(자유응답)

3) 연구참여자 정보

사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은 다음 <표 3-2>와 같다.

<표 3-2> 연구 참여자 일반적 사항

구분	성별	연령	학력	보호 기간	시설유형	퇴소년도	현재 주거상황	주거지 이주횟수
1	남	29	대졸	20년	양육시설	2010	LH 전세주택 거주	3회 이상
2	남	21	대학 재학	8년	양육시설	2014	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	2회
3	남	26	대졸	20년	양육시설	2013	보증금 있는 하숙집 거주	3회
4	여	27	대학 중퇴	20년	공동생활 가정	2010	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	3회 이상
5	여	20	대학 재학	18년	양육시설	2015	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	1회



<표 3-3> 연구 참여자별 자료 수집

구분	성별	연령	조사횟수	수집 자료
1	남	29	2	녹취록, 사진, 현장노트
2	남	21	3	녹취록, 사진, 현장노트
3	남	26	3	녹취록, 사진, 현장노트
4	여	27	3	녹취록, 현장노트
5	여	20	1	녹취록, 사진, 현장노트

3. 분석방법

1) 분석방법

녹음된 심층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들은 질적연구의 일반적인 분석방법에 따라 원자료의 전사→코딩→범주화의 과정을 거쳐 정리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면접 내용의 녹음을 통해 얻어진 자료들에 대해 철저한 전사 작업을 실시하였다. 전사를 담당하는 인턴은 녹음 후 가능한 빨리 해당 내용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록, 저장하였고 전사 시에는 언어적, 비언어적 내용을 구별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필사 후 녹음 내용과 대조하여 정확성을 점검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전사본을 통해 코딩을 시행하였다. 코딩은 자료와 친숙해지고 자료를 분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미지, 단어, 및 개념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드러나지 않은 패턴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상황과 맥락 내에서 대상자들의 의도를 코딩하기 때문에 중요한 과정이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코딩의 의미를 전후 문맥에 따라 해석하고 유사성에 기초하여 범주화하였다. 코딩된 내용을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발전시켜 하위 범주를 설정한 후 연구자 및 자문을 통한 토론을 거쳐 연구자들이 동의한 범주에 대하여 범주화 하였다. 범주화된 내용들은 그 내용을 주제 요인으로 정립하였다.

2) 타당성 및 신뢰성

본 조사의 수행과정과 결과 도출에 있어 타당도 및 신뢰성 확보는 연구자 들간의 검토, 수정과 보완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및 해석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다각도 분석이 시행되었다. 해석에 의문점이 있는 부분은 직접 인터뷰를 시행했던 연구자가 당시 인터뷰의 문맥상 해당 원자료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시 복기하여 설명한 후, 재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자간 논의 이외에도 질적연구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추출된 주제어 및 범주화를 검토하도록 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를 높였다.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CHAPTER

04



보 호 종 결 아 동 주 거 지 원 제 도 개 선 을 위 한 주 거 권 실 태 조 사

보호종결 주거권 실태조사 결과

제1절 양적조사 결과

제2절 질적조사 결과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보호종결 주거권 실태조사 결과

제1절 양적조사 결과

1. 현재 주거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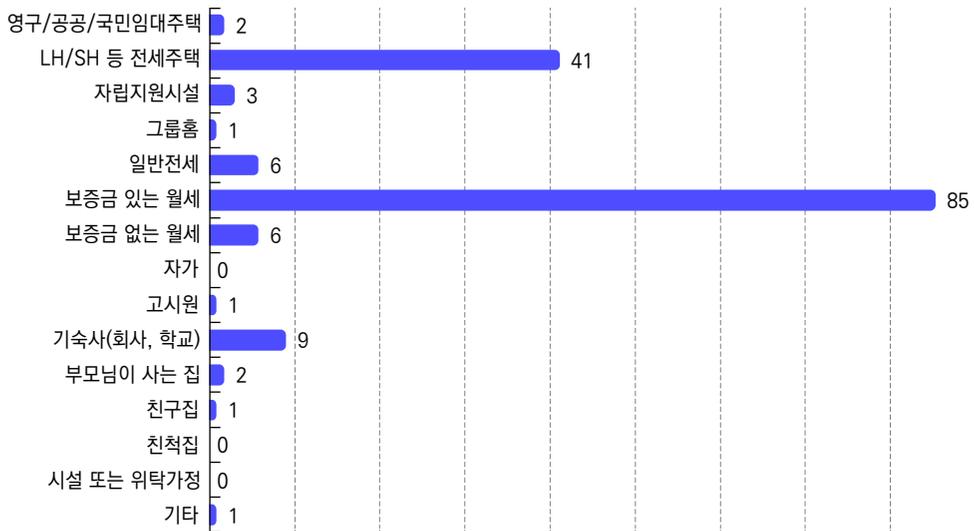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유형

보호 종결 아동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유형은 <표 4-1>과 같다. 영구/공공/국민임대주택이 2명(1.3%), LH/SH 등 전세주택이 41명(25.6%), 자립지원시설이 3명(1.9%), 그룹홈이 1명(0.6%), 일반전세가 6명(3.8%), 보증금 있는 월세가 85명(53.1%), 보증금 없는 월세가 6명(3.8%), 고시원이 1명(.6%), 기숙사(회사, 학교)가 9명 (5.6%), 부모님이 사는 집이 2명 (1.3%), 친구집이 1명 (.6%), 기타가 1명(.6%)으로 보증금 있는 월세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LH/SH 등 전세주택, 기숙사 순이었다.

<표 4-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유형

	빈도(명)	퍼센트(%)
영구/공공/국민임대주택	2	1.3
LH/SH 등 전세주택	41	25.6
자립지원시설	3	1.9
그룹홈	1	.6
일반전세	6	3.8
보증금 있는 월세	85	53.1
보증금 없는 월세	6	3.8
자가	0	0
고시원	1	.6
기숙사(회사, 학교)	9	5.6
부모님이 사는 집	2	1.3

	빈도(명)	퍼센트(%)
친구집	1	.6
친척집	0	0
시설 또는 위탁가정	0	0
기타	1	.6
무응답	2	1.3
합계	160	100.0



[그림 4-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유형

2)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위치

보호 종결 아동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위치는 <표 4-2>와 같다. 지상이 133명 (83.1%), 반 지하 11명(6.9%), 옥상(옥탑) 6명(3.8%)으로 지상에 거주하는 아동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반 지하, 옥상 순이었다.



<표 4-2>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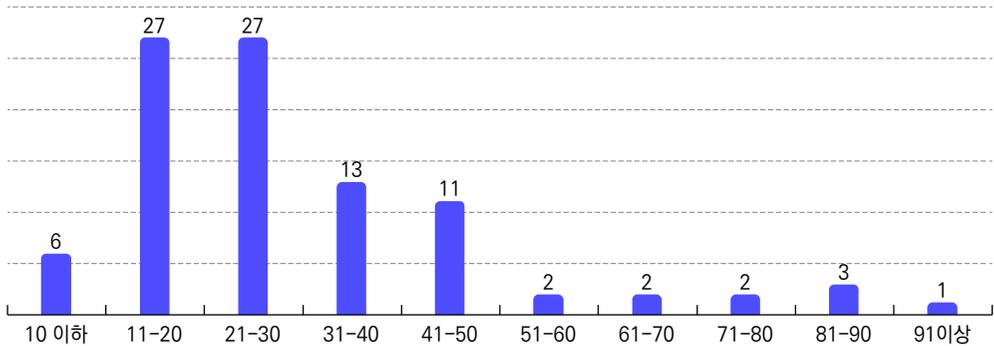
	빈도(명)	퍼센트(%)
지상	133	83.1
반지하	11	6.9
지하	0	0
옥상(옥탑)	6	3.8
무응답	10	6.3
합계	160	100.0

3) 현재 거주하는 주거면적 및 구조

보호 종결 아동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면적 및 구조는 <표 4-3>과 같다. 주거면적은 10㎡ 이하가 6명(3.8%), 11-20㎡가 27명(16.9%), 21-30㎡가 27명(16.9%), 31-40㎡가 13명(8.1%), 41-50㎡가 11명(6.9%), 51-60㎡가 2명(1.3%), 61-70㎡가 2명(1.3%), 71-80㎡가 2명(1.3%), 81-90㎡가 3명(1.9%), 91㎡ 이상이 1명(0.6%)으로 11-20㎡와 21-30㎡가 가장 많았고, 31-40㎡가 그 뒤를 이었다. 방 개수는 1개가 116명(72.5%), 2개가 33명(20.6%), 3개가 7명(4.4%), 4개가 1명(0.6%), 6개가 1명(0.6%)으로 방이 1개 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개, 3개 순이었다. 거실 개수는 0개가 50명(31.3%), 1개가 93명(58.1%), 2개가 1명(0.6%)으로 거실 개수가 1개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0개가 뒤를 이었다. 화장실 (목욕시설) 개수는 1개가 154명(96.3%), 2개가 1명(0.6%), 3개가 1명(0.6%)으로 화장실이 1개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부엌 개수는 0개가 12명(7.5%), 1개가 136명(85.0%), 2개가 2명(1.3%)으로 부엌이 1개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4-3> 현재 거주하는 주거면적 및 구조

		빈도(명)	퍼센트(%)
전체		160	100
주거면적(㎡)	10 이하 (3평 이하)	6	3.8
	11 -20 (3 - 6평)	27	16.9
	21 -30 (6 - 9평)	27	16.9
	31 - 40 (9 - 12평)	13	8.1
	41 -50 (12 - 15평)	11	6.9
	51 -60 (15 - 18평)	2	1.3
	61 -70 (18 - 21평)	2	1.3
	71 -80 (21 - 24평)	2	1.3
	81 -90 (24 - 27평)	3	1.9
	91 이상 (27평 이상)	1	.6
무응답		66	41.3
방 개수	1	116	72.5
	2	33	20.6
	3	7	4.4
	4	1	.6
	6	1	.6
	무응답	2	1.3
거실 개수	0	50	31.3
	1	93	58.1
	2	1	.6
	무응답	16	10.0
화장실 (목욕시설) 개수	1	154	96.3
	2	1	.6
	3	1	.6
	무응답	4	2.5
부엌 개수	0	12	7.5
	1	136	85.0
	2	2	1.3
	무응답	10	6.3



[그림 4-2] 현재 거주하는 주거 면적(m²)

보호 종결 아동의 현재 거주하는 주거면적을 취업집단 미취업집단으로 나누어 t-검증을 통해 평균차이를 알아본 결과, 취업집단이 미취업집단보다 더 넓은 주거 면적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경기권과 지방권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주거면적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4-3-1> 현재 거주하는 주거면적(집단별)

	구분	N	M(SD)	t값
주거면적(m2)	취업	47	35.54(21.28)	1.985*
	미취업	45	27.60(16.53)	
	서울·경기권	44	29.91(17.45)	-.529
	지방권	52	32.16(2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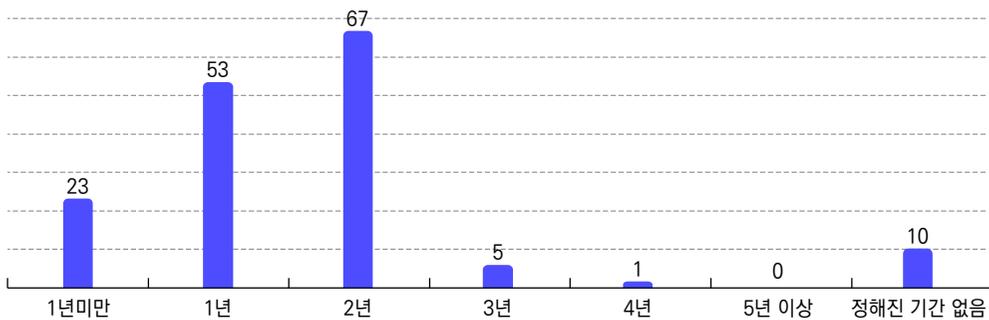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4)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의 계약기간

보호 종결 아동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의 계약기간을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 <표 4-4>와 같다. 서울·경기권의 경우 1년 미만인 6명(8.5%), 1년이 20명(28.2%), 2년이 40명(56.3%), 4년이 1명(1.4%), 정해진 기간 없음이 4명(5.6%)으로 2년이 가장 많았고, 1년이 그 뒤를 이었다. 지방권의 경우 서울·경기권의 경우 1년 미만인 17명(19.3%), 1년이 33명(37.5%), 2년이 27명(30.7%), 3년이 5명(5.7%), 정해진 기간 없음이 6명(6.8%)으로 1년이 가장 많았고, 2년이 그 뒤를 이었다.

<표 4-4>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의 계약기간

계약기간	빈도(명)	
	서울·경기권	지방권
1년 미만	6	17
1년	20	33
2년	40	27
3년	0	5
4년	1	0
정해진 기간 없음	4	6
합계	71	88



[그림 4-3]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의 계약기간

5) 현재 주거상태에 대한 만족도 (연령집단별 평균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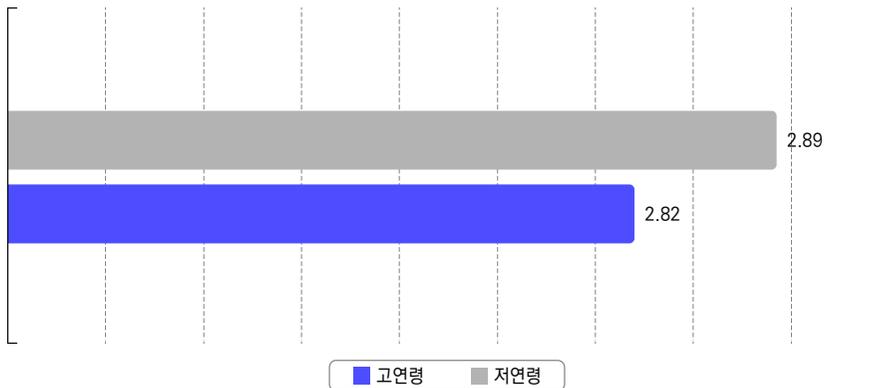
연령 집단(고연령, 저연령)에 따라 현재 주거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지 각 변수에 대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5>와 같다. t-검증 결과 모든 변수에서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5> 현재 주거상태에 대한 만족도

주거상태	연령구분	N	M(SD)	t값
집의 구조물 (건고, 균일상태)	고	84	2.86(.64)	-1.31
	저	75	2.99(.60)	
방수상태 (습기, 빗물 새는 정도)	고	84	2.77(.77)	-1.24
	저	75	2.92(.71)	
난방상태	고	83	2.86(.72)	-1.18
	저	74	2.99(.67)	
환기상태 (창문개폐여부, 통풍상태)	고	83	2.69(.85)	-1.55
	저	75	2.88(.72)	
채광상태	고	83	2.86(.84)	-.30
	저	75	2.89(.73)	
방음상태 (층간소음 등)	고	83	2.47(.86)	-.87
	저	75	2.59(.82)	
재난,재해 (산사태, 홍수 등) 안정성	고	84	2.68(.79)	-1.83
	저	72	2.89(.64)	
화재로부터의 안정성 (화재대피시설)	고	83	2.64(.74)	-1.65
	저	75	2.83(.69)	
주거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고	84	2.82(.70)	-.65
	저	75	2.89(.69)	
집 내·외부의 청결상태	고	84	2.80(.69)	-.78
	저	74	2.88(.60)	

주. 고 = 만 24세~만28세, 저=만18세~만23세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4-4] 현재 주거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보호 종결 아동에 대하여 지역별, 취업유무에 따라 현재 주거상태 만족도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각 집단별로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5-1>과 같다. t-검증 결과 각 집단에 대하여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5-1> 현재 주거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구분	N	M(SD)	t값
주거상태 만족도	서울·경기권	71	2.79(.77)	-1.065
	지방권	88	2.91(.62)	
	취업	74	2.78(.71)	-1.280
	미취업	71	2.93(.66)	

* $p < .05$. ** $p < .01$. *** $p < .001$.

6)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시설 종류와 사용형태

보호 종결 아동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시설 종류와 사용형태는 <표 4-6>과 같다. 상하수도는 단독사용이 88명(55.0%), 공동사용이 70명(43.8%)으로 단독사용이 공동사용보다 더 많았다. 부엌은 단독사용-입식이 137명(85.6%), 단독사용-재래식이 4명(2.5%), 공동사용-입식이 13명(8.1%), 공동사용-재래식이 2명(1.3%), 시설 없음이 3명(1.9%)으로 단독사용-입식이 가장 많았고, 공동사용-입식, 단독사용-재래식 순이었다. 화장실은 단독사용-입식이 145명(90.6%), 단독사용-재래식이 4명(2.5%), 공동사용-입식이 7명(4.4%), 공동사용-재래식이 1명(0.6%)으로 단독사용-입식이 가장 많았고, 공동사용-입식, 단독사용-재래식 순이었다. 목욕시설은 단독사용-온수가능이 146명(91.3%), 공동사용-온수가능이 9명(5.6%), 시설 없음이 1명(0.6%)으로 단독사용-온수가능이 가장 많았고, 공동사용-온수가능이 그 뒤를 이었다. 난방시설은 기름보일러가 4명(2.5%), 가스보일러가 112명(70%), 전기보일러가 23명(14.4%), 중앙난방(지역난방)이 14명(8.8%), 전기장판이 4명(2.5%)으로 가스보일러가 가장 많았고, 전기보일러, 중앙난방(지역난방) 순이었다.



<표 4-6>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시설 종류와 사용형태

		빈도(명)	퍼센트(%)
전체		160	100.0
상하수도	단독사용	88	55.0
	공동사용	70	43.8
	시설 없음	0	0
	무응답	2	1.3
부엌	단독사용-입식	137	85.6
	단독사용-재래식	4	2.5
	공동사용-입식	13	8.1
	공동사용-재래식	2	1.3
	시설 없음	3	1.9
	무응답	1	.6
화장실	단독사용-입식	145	90.6
	단독사용-재래식	4	2.5
	공동사용-입식	7	4.4
	공동사용-재래식	1	.6
	시설 없음	0	0
	무응답	3	1.9
목욕시설	단독사용-온수가능	146	91.3
	단독사용-온수불가능	0	0
	공동사용-온수가능	9	5.6
	공동사용-온수불가능	0	0
	시설 없음	1	.6
	무응답	4	2.5
난방시설	연탄 또는 재래식	0	0
	연탄보일러	0	0
	나무·석탄보일러	0	0
	기름보일러	4	2.5
	가스보일러	112	70
	전기보일러	23	14.4
	중앙난방(지역난방)	14	8.8
	전기장판	4	2.5
	기타	0	0
	무응답	3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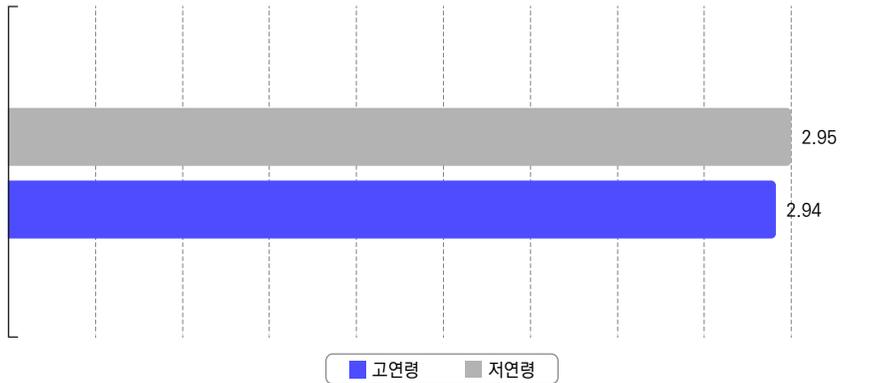
7) 현재 살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연령집단별 평균 차이)

연령 집단(고연령, 저연령)에 따라 현재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지 각 변수에 대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7>과 같다. t-검증 결과 모든 변수에서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7> 현재 살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주거상태	연령구분	N	M(SD)	t값
시장/대형마트/백화점 접근용이성	고	83	3.07(.64)	.464
	저	75	3.03(.59)	
병원(병의원/대학병원/기타 의료시설) 접근용이성	고	84	3.05(.67)	1.682
	저	74	2.86(.69)	
공공기관(시청, 읍/면/동사무소) 접근용이성	고	84	3.02(.66)	.849
	저	75	2.93(.68)	
문화시설, 공원 등 접근용이성	고	84	2.99(.77)	1.538
	저	75	2.80(.77)	
대중교통 접근용이성	고	83	3.08(.65)	.532
	저	75	3.03(.72)	
주차시설 이용편의성	고	84	2.74(.84)	.593
	저	74	2.66(.63)	
주변도로의 보행 안전	고	84	2.87(.71)	-.855
	저	75	2.96(.63)	
통학 혹은 출·퇴근 거리의 용이성	고	84	2.94(.68)	-.292
	저	75	2.97(.74)	
치안 및 범죄 등 방범상태(CCTV 등)	고	84	2.70(.82)	-.871
	저	75	2.81(.78)	
자동차 경적, 집주변의 소음정도	고	84	2.44(.81)	-1.681
	저	75	2.65(.78)	
청소 및 쓰레기 처리상태	고	84	2.77(.68)	-.957
	저	75	2.88(.72)	
대기오염정도	고	84	2.64(.75)	-1.886
	저	74	2.85(.63)	
이웃과의 관계	고	84	2.80(.69)	-.522
	저	74	2.85(.59)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고	84	2.94(.63)	-.065
	저	75	2.95(.57)	

주: 고 = 만 24세~만28세, 저=만18세~만23세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4-5] 현재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보호 종결 아동에 대하여 지역별, 취업유무에 따라 현재 주거환경 만족도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각 집단별로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7-1>과 같다. t-검증 결과 각 집단에 대하여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7-1> 현재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구분	N	M(SD)	t값
주거환경 만족도	서울·경기권	71	2.94(.65)	.005
	지방권	88	2.94(.55)	
	취업	74	2.91(.65)	-.809
	미취업	71	2.99(.55)	

8) 현재 살고 있는 주거에 대한 자금 마련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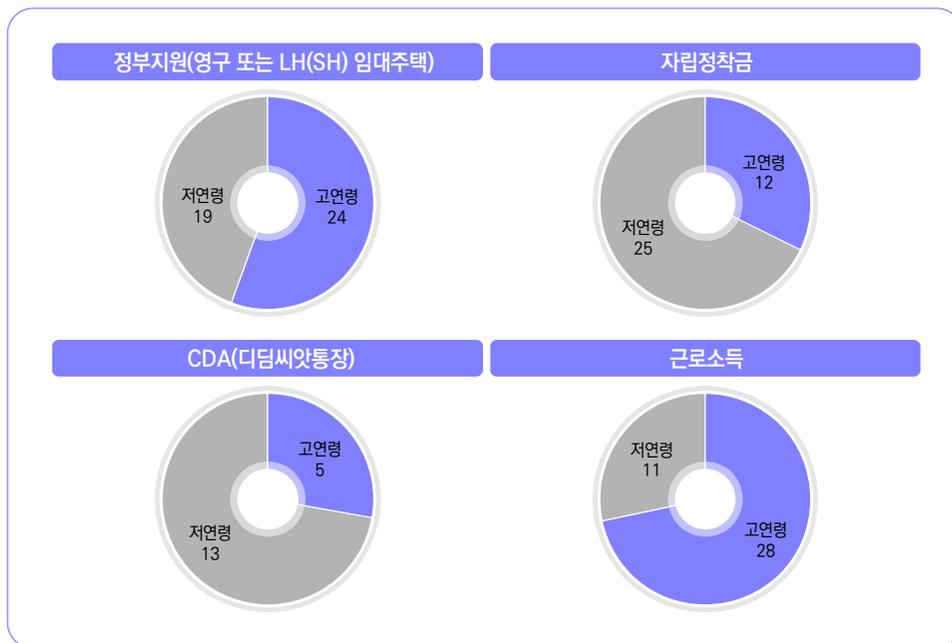
보호 종결 아동의 현재 거주하고 주거에 대한 자금 마련 방법은 <표 4-8>과 같다. 고연령(만 24세~만 28세)의 경우, 정부지원(영구 또는 LH(SH) 임대주택)이 24명(23.5%), 자립정착금이 12명(11.8%), CDA(디딤씨앗통장)이 5명(4.9%), 보호 중 발생한 후원금이 2명(2.0%), 친부모/형제/친인척이 무상으로 주었거나 빌려줌이 4명(3.9%), 금융기관에서 빌렸음이 4명(3.9%), 금융기관 외 지인 등을 통해 빌림이 1명(1.0%), 시설 또는 위탁부모가 마련해줌이 1명(1.0%), 민간후원단체가 4명(3.9%), 근로소득이 28명(27.5%), 기타가 17명(16.7%)으로 근로소득이 가장 많았고, 정부 지원(영구 또는 LH(SH) 임대주택), 기타, 자립정착금 순이었다.

저연령(만18세~만23세)의 경우, 정부지원(영구 또는 LH(SH) 임대주택)이 19명(20.4%), 자립정착금이 25명(26.9%), CDA(디딤씨앗통장)이 13명(14.0%), 보호 중 발생한 후원금이 6명(6.5%), 친부모/형제/친인척이 무상으로 주었거나 빌려줌이 4명(4.3%), 민간후원단체가 4명(4.3%), 근로소득이 11명(11.8%), 기타가 17명(16.7%)으로 자립정착금이 가장 많았고, 정부지원(영구 또는 LH(SH) 임대주택), CDA(디딤씨앗통장), 기타 순이었다.

<표 4-8> 현재 살고 있는 주거에 대한 자금 마련 방법(중복응답 포함)

	연령구분	빈도(명)	퍼센트(%)
정부지원(영구 또는 LH(SH) 임대주택)	고	24	23.5%
	저	19	20.4%
자립정착금	고	12	11.8%
	저	25	26.9%
CDA(디딤씨앗통장)	고	5	4.9%
	저	13	14.0%
보호 중 발생한 후원금	고	2	2.0%
	저	6	6.5%
친부모/형제/친인척이 무상으로 주었거나 빌려줌	고	4	3.9%
	저	4	4.3%
금융기관에서 빌렸음	고	4	3.9%
	저	0	0.0%
금융기관 외 지인 등을 통해 빌림	고	1	1.0%
	저	0	0.0%
시설 또는 위탁부모가 마련해줌	고	1	1.0%
	저	0	0.0%
민간후원단체	고	4	3.9%
	저	4	4.3%
근로소득	고	28	27.5%
	저	11	11.8%
기타	고	17	16.7%
	저	11	11.8%
합계		195	100%

주. 고 = 만 24세~만28세, 저=만18세~만23세



[그림 4-6] 현재 살고 있는 주거에 대한 자금 마련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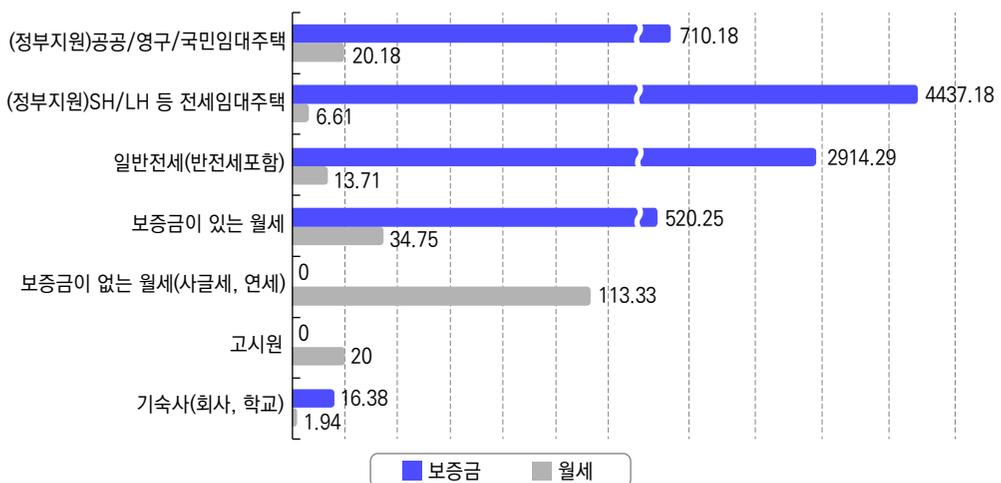
9)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에 대한 임차료

보호 종결 아동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에 대한 임차료는 <표 4-9>와 같다. 공공/영구/국민임대주택(정부지원)의 경우 보증금은 평균 710.18만원, 월세는 평균 20.18만원, 관리비는 평균 1.64만원이었고, SH/LH 등 전세임대주택(정부지원)의 경우, 보증금은 평균 4,437.18만원, 월세는 평균 6.61만원, 관리비는 평균 4.18만원이었다. 일반전세(반전세 포함)의 경우 보증금은 평균 2,914.29만원, 월세는 평균 13.71만원, 관리비는 평균 3.21만원이었고,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경우, 보증금은 평균 520.25만원, 월세는 평균 34.75만원, 관리비는 평균 2.66만원이었으며, 보증금이 없는 월세(사글세, 연세)의 경우 월세는 평균 113.33만원, 관리비는 평균 6.33만원이었다. 기숙사(회사, 학교)의 경우 보증금은 평균 16.38만원, 월세는 평균 1.94만원, 관리비는 평균 5.88만원이었다.

<표 4-9> 현재 살고 있는 주거에 대한 임차료

(단위: 만원)

		N	최소값	최대값	M	SD
(정부지원) 공공/영구/국민임대주택	보증금	11	0	5000	710.18	1455.07
	월세	11	0	55	20.18	17.72
	관리비	11	0	7	1.64	2.84
(정부지원) SH/LH 등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39	0	10000	4437.18	2871.67
	월세	39	0	30	6.61	8.05
	관리비	39	0	13	4.18	3.58
일반전세 (반전세포함)	보증금	7	900	7000	2914.29	2331.26
	월세	7	0	31	13.71	14.55
	관리비	7	0	6	3.21	2.16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	80	40	3000	520.25	502.28
	월세	80	10	70	34.75	10.77
	관리비	80	0	12	2.66	3.10
보증금이 없는 월세 (사글세, 연세)	보증금	3	0	0	.00	.00
	월세	3	10	300	113.33	161.97
	관리비	3	.0	14.0	6.33	7.09
고시원	보증금	1	0	0	.00	.00
	월세	1	20	20	20.00	.00
	관리비	1	0	0	.00	.00
기숙사 (회사, 학교)	보증금	8	0	99	16.38	35.21
	월세	8	0	11	1.94	3.99
	관리비	8	0	47	5.88	16.62



[그림 4-7] 현재 살고 있는 주거에 대한 임차료(만원)



10) 현재 주거임차료에 대한 부담 정도

보호 종결 아동의 지역별 평균 주거임차료 부담 정도(1=매우부담~4=전혀부담 없다)는 <표 4-10-1>과 같다. 서울 지역의 주거임차료 부담 평균은 2.05(SD=0.93), 경기·인천 지역은 2.57(SD=1.01), 강원도 지역은 3.67(SD=0.58), 전라 지역은 2.44(SD=0.92), 충청 지역은 2.13(SD=0.89), 경상 지역은 2.57(SD=1.03), 제주 지역은 2.50(SD=0.71)으로 나타났다.

<표 4-10-1 > 지역별 평균 주거임차료 부담 정도

지역	N	M	SD
서울	40	2.05	.932
경기·인천	30	2.57	1.006
강원도	3	3.67	.577
전라	18	2.44	.922
충청	16	2.13	.885
경상	46	2.57	1.025
제주	2	2.50	.707

보호 종결 아동에 대하여 연령별, 지역별, 성별, 취업유무에 따라 현재 주거임차료에 대한 부담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각 집단별로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10-2>와 같다. t-검증 결과 각 집단에 대하여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10-2> 현재 주거임차료에 대한 부담 정도

구분	N	M(SD)	t값
고연령	83	2.27(.99)	-1.75
저연령	72	2.54(.98)	
서울·경기권	70	2.27(.99)	-1.40
지방권	85	2.49(.98)	
남	76	2.49(1.05)	1.152
여	79	2.30(.93)	
취업	72	2.46(1.01)	.847
미취업	69	2.32(.95)	

주. 고연령 = 만 24세~만28세, 저연령=만18세~만23세

* $p < .05$. ** $p < .01$. *** $p < .001$.

11) 현재 거주지와 관련한 부채 유무 및 부채 액수

보호 종결 아동의 현재 거주지와 관련한 부채 유무는 <표 4-11>과 같다. 부채가 있는 경우는 8명(5.0%), 부채가 없는 경우는 146명(91.3%)이었다.

<표 4-11> 현재 거주지와 관련한 부채 유무

	빈도(명)	퍼센트(%)
예	8	5.0
아니오	146	91.3
무응답	6	3.8
합계	160	100.0

보호 종결 아동의 현재 거주지와 관련한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 액수는 <표 4-11-1>과 같다. 300만원은 3명(37.5%), 500만원은 1명(12.5%), 1000만원 2명(25.0%), 1700만원은 1명(12.5%), 6000만원은 1명(12.5%)으로 300만원이 가장 많았고, 10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표 4-11-1> 주택관련 부채 액수

금액(만원)	빈도(명)	퍼센트(%)
300	3	37.5
500	1	12.5
1000	2	25.0
1700	1	12.5
6000	1	12.5
합계	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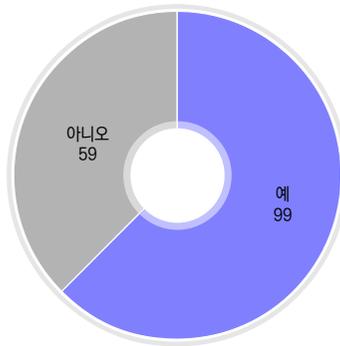
12) 앞으로의 이사 계획

보호 종결 아동의 앞으로의 이사 계획 유무는 <표 4-12>와 같다. 이사 계획이 있는 경우는 99명(61.9%), 이사 계획이 없는 경우는 59명(36.9%)이었다.



<표 4-12> 앞으로의 이사 계획 유무

	빈도(명)	퍼센트(%)
예	99	61.9
아니오	59	36.9
무응답	2	1.3
합계	160	100.0



[그림 4-8] 앞으로의 이사 계획 유무

이사 계획이 있는 보호 종결 아동의 지역 이동 유무는 <표 4-12-1>과 같다. 지역 이동 없음은 65명(65.7%), 타 지역으로 이동은 34명(34.3%)이었다.

<표 4-12-1> 지역 이동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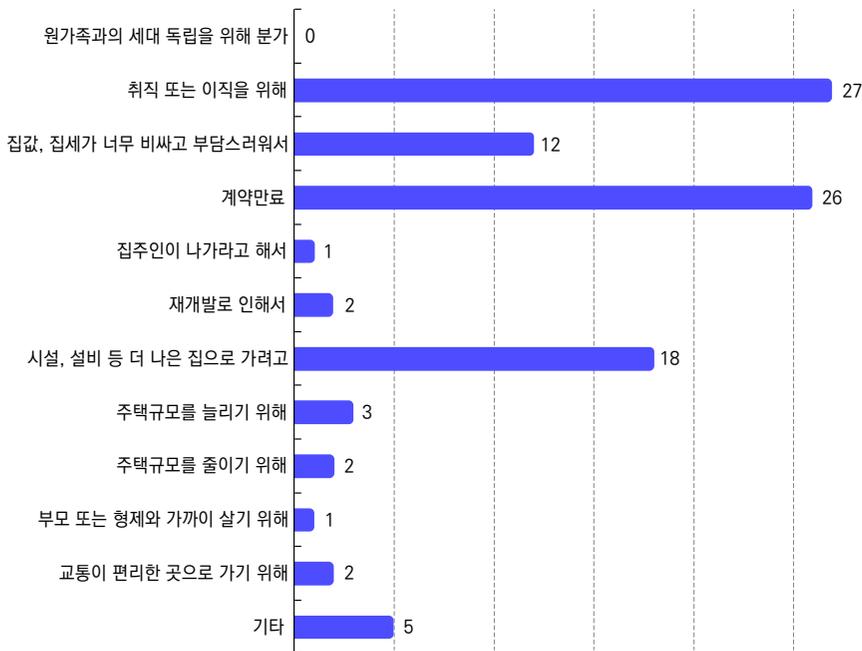
	빈도(명)	퍼센트(%)
지역 이동 없음	65	65.7
타 지역으로 이동	34	34.3
합계	99	100.0

보호 종결 아동의 이사를 계획하는 이유는 <표 4-12-2>와 같다. 취직 또는 이직을 위해가 27명(27.3%), 집값, 집세가 너무 비싸고 부담스러워서가 12명(12.1%), 계약만료가 26명(26.3%),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가 1명(1.0%), 재개발로 인해서가 2명(2.0%), 시설, 설비 등 더 나은 집으로 가려고가 18명(18.2%), 주택규모를 늘리기 위해가 3명(3.0%), 주택규모를 줄이기 위해가 2명(2.0%), 부모 또는 형제와 가까이 살기 위해가 1명(1.0%),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가기 위해가 2명(2.0%), 기타가

5명(5.1%)으로 취직 또는 이직을 위해가 가장 많았고, 계약만료, 시설, 설비 등 더 나은 집으로 가려고 순이었다.

<표 4-12-2> 이사를 계획하는 이유

	빈도(명)	퍼센트(%)
원가족과의 세대 독립을 위해 분가	0	0.0
취직 또는 이직을 위해	27	27.3
집값, 집세가 너무 비싸고 부담스러워서	12	12.1
계약만료	26	26.3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1	1.0
재개발로 인해서	2	2.0
시설, 설비 등 더 나은 집으로 가려고	18	18.2
주택규모를 늘리기 위해	3	3.0
주택규모를 줄이기 위해	2	2.0
부모 또는 형제와 가까이 살기 위해	1	1.0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가기 위해	2	2.0
기타	5	5.1
합계	99	100.0



[그림 4-9] 이사를 계획하는 이유



13) 현재 이용한 적이 있는 주거복지 관련 사업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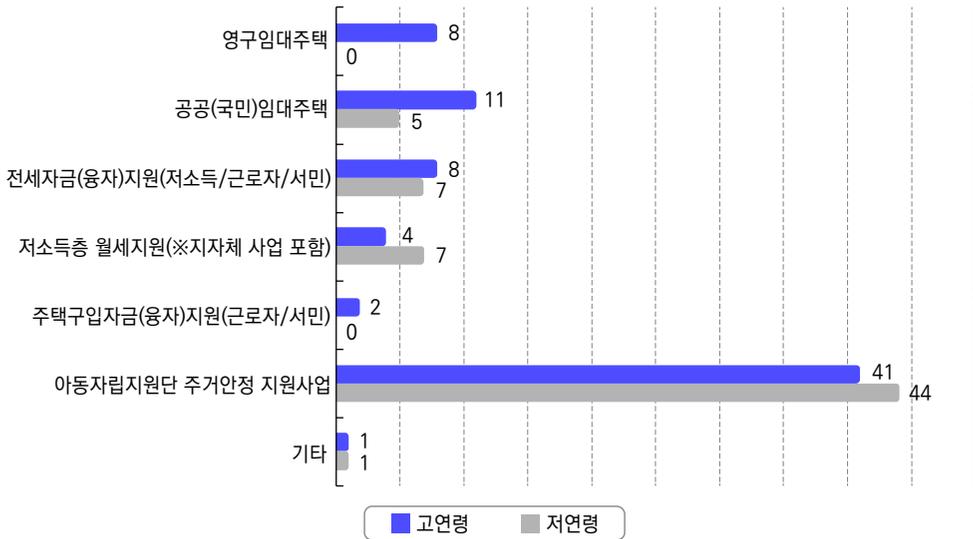
보호 종결 아동의 현재 이용한 적이 있는 주거복지 관련 사업 종류는 <표 4-13>과 같다. 고 연령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이 8명(10.7%), 공공(국민)임대주택이 11명(14.7%), 전세자금(용자)지원(저소득/근로자/서민)이 8명(10.7%), 저소득층 월세지원(※지자체 사업 포함)이 4명(5.3%), 주택구입자금(용자)지원(근로자/서민)이 2명(2.7%), 아동자립지원단 주거안정 지원사업 41명(54.7%), 기타가 1명(1.3%)으로 아동자립지원단 주거안정 지원사업이 가장 많았고, 공공(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전세자금(용자)지원(저소득/근로자/서민)순이었다.

저 연령의 경우, 공공(국민)임대주택이 5명(7.8%), 전세자금(용자)지원(저소득/근로자/서민)이 7명(10.9%), 저소득층 월세지원(※지자체 사업 포함)이 7명(10.9%), , 아동자립지원단 주거안정 지원사업 44명(68.8%), 기타가 1명(1.6%)으로 아동자립지원단 주거안정 지원사업이 가장 많았고, 전세자금(용자)지원(저소득/근로자/서민), 저소득층 월세지원(※지자체 사업 포함)순이었다.

<표 4-13> 현재 이용한 적이 있는 주거복지 관련 사업 종류

	연령구분	빈도(명)	퍼센트(%)
영구임대주택	고	8	10.7
	저	0	0
공공(국민)임대주택	고	11	14.7
	저	5	7.8
전세자금(용자)지원(저소득/근로자/서민)	고	8	10.7
	저	7	10.9
저소득층 월세지원(※지자체 사업 포함)	고	4	5.3
	저	7	10.9
주택구입자금(용자)지원(근로자/서민)	고	2	2.7
	저	0	0
아동자립지원단 주거안정 지원사업	고	41	54.7
	저	44	68.8
기타	고	1	1.3
	저	1	1.6

주. 고 = 만 24세~만28세, 저=만18세~만23세



[그림 4-10] 현재 이용한 적이 있는 주거복지 관련 사업 종류

14) 현재 주거지원 서비스 필요성의 유무

보호 종결 아동이 생각하는 현재 주거지원 서비스 필요성의 유무는 <표 4-14>와 같다. 필요하다가 144명(90.0%), 필요없다가 14명(8.8%)이었다.

<표 4-14> 현재 주거지원 서비스 필요성의 유무

	빈도(명)	퍼센트(%)
필요하다	144	90.0
필요없다	14	8.8
무응답	2	1.3
합계	160	100.0



[그림 4-11] 현재 주거지원 서비스 필요성의 유무

보호 종결 아동이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거지원 서비스의 종류를 지역별, 취업 유무별로 나눈 결과는 <표 4-14-1>과 같다. 먼저 지역별로 보았을 때, 서울·경기권의 경우 월세지원이 34명(51.5%), 전세자금지원이 20명(30.3%), 주택 개보수 비용이 2명(3.0%), 공공임대주택이 4명(6.1%), 이사비용이 2명(3.0%), 주거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이 1명(1.5%),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주거공간이 1명(1.5%), LH 전세 임대 수수료가 1명(1.5%), 기숙사비지원 1명(1.5%)으로 월세 지원이 가장 많았고, 전세자금지원이 그 뒤를 이었다. 지방권의 경우 월세지원이 30명(38.5%), 전세자금지원이 35명(44.9%), 주택 개보수 비용이 3명(3.8%), 공공 임대주택이 5명(6.4%), 이사비용이 1명(1.3%), 주거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이 2명 (2.6%),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주거공간이 1명(1.3%), 관리비지원이 1명(1.3%) 으로 전세 자금지원이 가장 많았고, 월세지원이 그 뒤를 이었다.

취업유무별로 보았을 때, 취업집단의 경우 월세지원이 21명(31.3%), 전세자금 지원이 35명(52.2%)이 주택 개보수 비용이 1명(1.5%), 공공임대주택이 6명(9.0%), 이사비용이 2명(3.0%),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주거공간이 1명(1.5%), 관리비지원이 1명(1.5%)으로 전세자금지원이 가장 많았고, 월세지원이 그 뒤를 이었다. 미취업집단의 경우 월세지원이 37명(56.1%), 전세자금지원이 16명(24.2%), 주택 개보수 비용이 4명(6.1%), 공공임대주택이 3명(4.5%), 이사비용이 1명(1.5%), 주거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이 3명(4.5%), LH 전세 임대 수수료가 1명(1.5%), 기숙사비지원이 1명

(1.5%)으로 월세지원이 가장 많았고, 전세자금지원이 그 뒤를 이었다.

<표 4-14-1> 현재 필요한 주거지원 서비스의 종류

계약기간	빈도(명)			
	서울·경기권	지방권	취업	미취업
월세지원	34	30	21	37
전세자금지원	20	35	35	16
주택 개보수 비용	2	3	1	4
공공임대주택	4	5	6	3
이사비용	2	1	2	1
주거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1	2	0	3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주거공간	1	1	1	0
LH 전세 임대 수수료	1	0	0	1
관리비지원	0	1	1	0
기숙사비지원	1	0	0	1
합계	66	78	67	66

2. 과거 주거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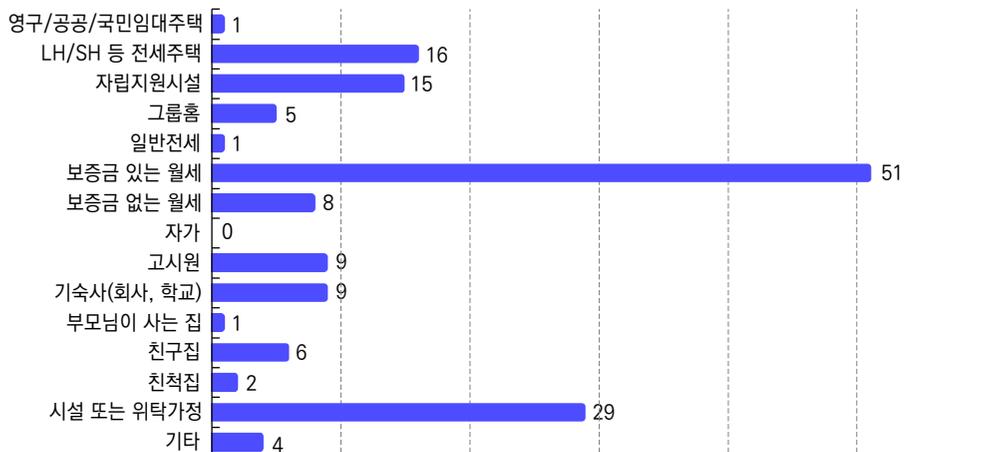
1) 과거 거주했던 주거유형

보호 종결 아동의 과거 거주했던 주거유형은 <표 4-15>와 같다. 영구/공공/국민임대주택이 1명(0.6%), LH/SH 등 전세주택이 16명(10.0%), 자립지원시설이 15명(9.4%), 그룹홈이 5명(3.1%), 일반전세가 1명(0.6%), 보증금 있는 월세가 51명(31.9%), 보증금 없는 월세가 8명(5.0%), 고시원이 9명(5.6%), 기숙사(회사, 학교)가 9명(5.6%), 부모님이 사는 집이 1명(0.6%), 친구집이 6명(3.8%), 친척집이 2명(1.3%), 시설 또는 위탁가정이 29명(18.1%), 기타가 4명(2.5%)으로 보증금 있는 월세가 가장 많았고, 시설 또는 위탁가정, LH/SH 등 전세주택, 자립지원시설 순이었다.



<표 4-15> 과거 거주했던 주거유형

	빈도(명)	퍼센트(%)
영구/공공/국민임대주택	1	.6
LH/SH 등 전세주택	16	10.0
자립지원시설	15	9.4
그룹홈	5	3.1
일반전세	1	.6
보증금 있는 월세	51	31.9
보증금 없는 월세	8	5.0
자가	0	0
고시원	9	5.6
기숙사(회사, 학교)	9	5.6
부모님이 사는 집	1	.6
친구집	6	3.8
친척집	2	1.3
시설 또는 위탁가정	29	18.1
기타	4	2.5
무응답	3	1.9
합계	160	100.0



[그림 4-12] 과거 거주했던 주거유형

2) 과거 거주했던 주거위치

보호 종결 아동의 과거 거주했던 주거위치는 <표 4-16>과 같다. 지상이 135명(84.4%), 반지하가 10명(6.3%), 지하가 5명(3.1%), 옥상(옥탑)이 4명(2.5%)으로 지상이 가장 많았으며 반지하가 그 뒤를 이었다.

<표 4-16> 과거 거주했던 주거위치

	빈도(명)	퍼센트(%)
지상	135	84.4
반지하	10	6.3
지하	5	3.1
옥상(옥탑)	4	2.5
무응답	6	3.8
합계	16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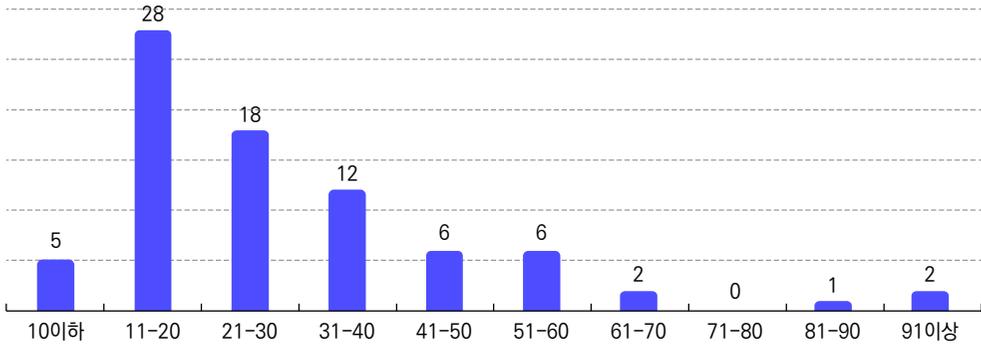
3) 과거 거주했던 주거면적 및 구조

보호 종결 아동의 과거 거주했던 주거면적 및 구조는 <표 4-17>과 같다. 주거면적은 10㎡ 이하가 5명(3.1%), 11-20㎡가 28명(17.5%), 21-30㎡ 18명(11.3%), 31-40㎡가 12명(7.5%), 41-50㎡가 6명(3.8%), 51-60㎡가 6명(3.8%), 61-70㎡가 2명(1.3%), 81-90㎡가 1명(0.6%), 91㎡ 이상이 2명(1.3%)으로 11-20㎡가 가장 많았고, 21-30㎡, 31-40㎡ 순이었다. 방 개수는 1개가 81명(50.6%), 2개가 19명(11.9%), 3개가 14명(8.8%), 4개가 7명(4.4%), 5개가 2명(1.3%), 6개가 2명(1.3%)으로 1개가 가장 많았고, 2개, 3개 순이었다. 거실 개수는 0개가 30명(18.8%), 1개가 82명(51.3%), 2개가 3명(1.9%)으로 1개가 가장 많았고 0개가 그 뒤를 이었다. 화장실(목욕시설) 개수는 0개가 1명(0.6%), 1개가 114명(71.3%), 2개가 11명(6.9%), 3개가 1명(0.6%), 4개가 1명(0.6%)으로 1개가 가장 많았고, 2개가 그 뒤를 이었다. 부엌 개수는 0개가 17명(10.6%), 1개가 109명(68.1%), 2개가 1명(0.6%), 3개가 1명(0.6%)으로 1개가 가장 많았고, 0개가 그 뒤를 이었다.



<표 4-17> 과거 거주했던 주거면적 및 구조

		빈도(명)	퍼센트(%)
전체		160	100
주거면적(m ²)	10 이하 (3평 이하)	5	3.1
	11 -20 (3 - 6평)	28	17.5
	21 -30 (6 - 9평)	18	11.3
	31 - 40 (9 - 12평)	12	7.5
	41 -50 (12 - 15평)	6	3.8
	51 -60 (15 - 18평)	6	3.8
	61 -70 (18 - 21평)	2	1.3
	71 -80 (21 - 24평)	0	0
	81 -90 (24 - 27평)	1	.6
	91 이상 (27평 이상)	2	1.3
무응답		80	50.0
방 개수	1	81	50.6
	2	19	11.9
	3	14	8.8
	4	7	4.4
	5	2	1.3
	6	2	1.3
	무응답	35	21.9
거실 개수	0	30	18.8
	1	82	51.3
	2	3	1.9
	무응답	45	28.1
화장실 (목욕시설) 개수	0	1	.6
	1	114	71.3
	2	11	6.9
	3	1	.6
	4	1	.6
	무응답	32	20
부엌 개수	0	17	10.6
	1	109	68.1
	2	1	.6
	3	1	.6
	무응답	32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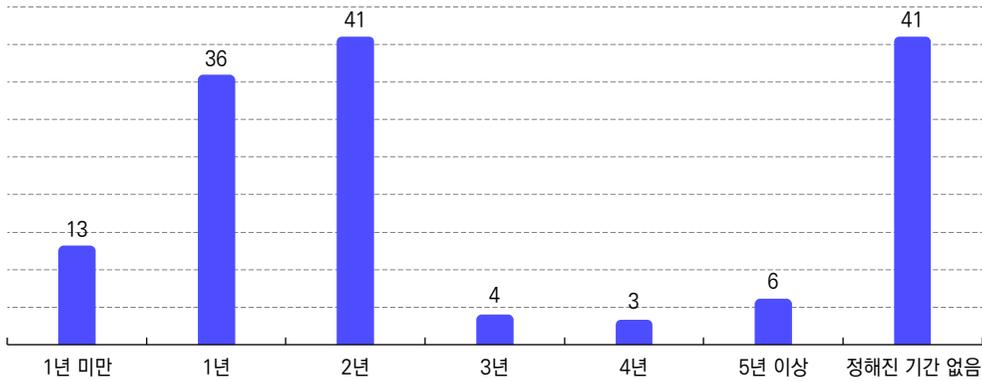
[그림 4-13] 과거 거주했던 주거면적(㎡)

4) 과거 거주했던 주거의 계약기간

보호 종결 아동의 과거 거주했던 주거의 계약기간은 <표 4-18>과 같다. 1년 미만이 13명(8.1%), 1년이 36명(22.5%), 2년이 41명(25.6%), 3년이 4명(2.5%), 4년이 3명(1.9%), 5년 이상이 6명(3.8%), 정해진 기간 없음이 41명(25.6%)으로 2년과 정해진 기간 없음이 가장 많았고, 1년이 그 뒤를 이었다.

<표 4-18> 과거 거주했던 주거의 계약기간

	빈도(명)	퍼센트(%)
1년 미만	13	8.1
1년	36	22.5
2년	41	25.6
3년	4	2.5
4년	3	1.9
5년 이상	6	3.8
정해진 기간 없음	41	25.6
무응답	16	10.0
합계	160	100.0



[그림 4-14] 과거 거주했던 주거의 계약기간

5) 과거 주거상태에 대한 만족도(연령집단별 평균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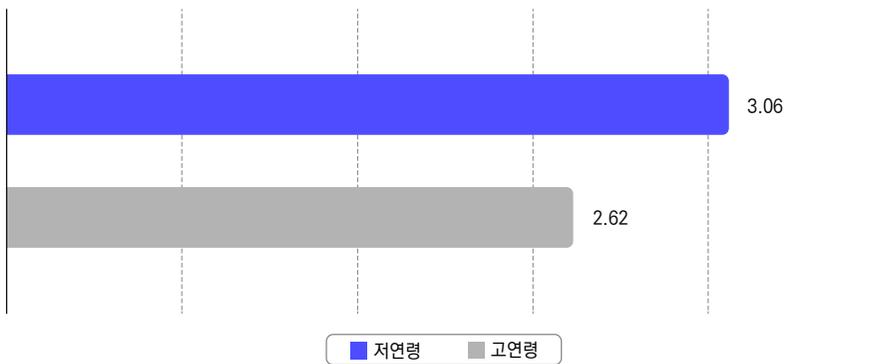
연령 집단(고연령, 저연령)에 따라 과거 주거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지 각 변수에 대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19>와 같다. t-검증 결과 모든 변수에서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저연령 집단이 고연령 집단에 비해 과거 주거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과거 주거상태에 대한 만족도

주거상태	연령구분	N	M(SD)	t값
집의 구조물 (견고, 균일상태)	고	81	2.73(.87)	-2.472*
	저	66	3.06(.76)	
방수상태 (습기, 빗물 새는 정도)	고	81	2.70(.86)	-2.241*
	저	66	3.02(.81)	
난방상태	고	80	2.76(.88)	-2.995**
	저	66	3.14(.63)	
환기상태 (창문개폐여부, 통풍상태)	고	81	2.68(.92)	-3.276**
	저	65	3.12(.72)	
채광상태	고	81	2.60(.93)	-3.367**
	저	66	3.09(.82)	
방음상태 (층간소음 등)	고	81	2.35(.95)	-3.779***
	저	66	2.91(.85)	

주거상태	연령구분	N	M(SD)	t값
재난,재해 (산사태, 홍수 등) 안정성	고	81	2.70(.81)	-3.130**
	저	66	3.11(.73)	
화재로부터의 안정성 (화재대피시설)	고	81	2.63(.83)	-3.421**
	저	66	3.06(.70)	
주거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고	79	2.62(.84)	-3.453**
	저	66	3.06(.70)	
집 내·외부의 청결상태	고	81	2.65(.85)	-2.856**
	저	64	3.03(.73)	

주. 고 = 만 24세~만28세, 저=만18세~만23세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4-15] 과거 주거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6) 과거 주거시설 종류와 사용형태

보호 종결 아동의 과거 거주했던 주거의 상하수도 사용형태는 <표 4-20>과 같다. 상하수도는 단독사용이 89명(55.6%), 공동사용이 57명(35.6%), 시설 없음이 1명(0.6%)으로 단독사용이 가장 많았고, 공동사용이 그 뒤를 이었다. 부엌은 단독 사용-입식이 109명(68.1%), 단독사용-채래식이 4명(2.5%), 공동사용-입식이 30명(18.8%), 시설 없음이 4명(2.5%)으로 단독사용-입식이 가장 많았고, 공동사용-입식이 그 뒤를 이었다. 화장실은 단독사용-입식이 113명(70.6%), 단독사용-채래식이 3명(1.9%), 공동사용-입식이 29명(18.1%), 공동사용-채래식 1명(0.6%)으로



단독사용-입식이 가장 많았고, 공동사용-입식이 그 뒤를 이었다. 목욕시설은 단독사용-온수가능이 110명(68.8%), 단독사용-온수불가능이 2명(1.3%), 공동사용-온수가능이 31명(19.4%)으로 단독사용-온수가능이 가장 많았고, 공동 사용-온수가능이 그 뒤를 이었다. 난방시설은 연탄 또는 재래식이 2명(1.3%), 연탄보일러가 1명(0.6%), 기름보일러가 13명(8.1%), 가스보일러가 99명(61.9%), 전기보일러가 21명(13.1%), 중앙난방(지역난방)이 12명(7.5%)으로 가스보일러가 가장 많았고, 전기보일러, 기름보일러, 중앙난방(지역난방) 순이었다.

<표 4-20> 과거 거주했던 주거시설 종류와 사용형태

		빈도(명)	퍼센트(%)
전체		160	100.0
상하수도	단독사용	89	55.6
	공동사용	57	35.6
	시설 없음	1	.6
	무응답	13	8.1
부엌	단독사용-입식	109	68.1
	단독사용-재래식	4	2.5
	공동사용-입식	30	18.8
	공동사용-재래식	0	0
	시설 없음	4	2.5
	무응답	13	8.1
화장실	단독사용-입식	113	70.6
	단독사용-재래식	3	1.9
	공동사용-입식	29	18.1
	공동사용-재래식	1	.6
	시설 없음	0	0
	무응답	14	8.8
목욕시설	단독사용-온수가능	110	68.8
	단독사용-온수불가능	2	1.3
	공동사용-온수가능	31	19.4
	공동사용-온수불가능	0	0
	시설 없음	0	0
	무응답	17	10.6

		빈도(명)	퍼센트(%)
전체		160	100.0
난방시설	연탄 또는 재래식	2	1.3
	연탄보일러	1	.6
	나무·석탄보일러	0	0
	기름보일러	13	8.1
	가스보일러	99	61.9
	전기보일러	21	13.1
	중앙난방(지역난방)	12	7.5
	전기장판	0	0
	기타	0	0
	무응답	12	7.5

7) 과거 거주했던 주거에 대한 자금 마련 방법

보호 종결 아동의 과거 거주했던 주거에 대한 자금 마련 방법은 <표 4-21>과 같다. 고연령(만 24세~만28세)의 경우 정부지원(영구 또는 LH(SH) 임대주택)이 10명(11.5%), 자립정착금이 14명(16.1%), CDA(디딤씨앗통장)가 3명(3.4%), 보호 중 발생한 후원금이 3명(3.4%), 친부모/형제/친인척이 무상으로 주었거나 빌려줌이 4명(4.6%), 금융기관에서 빌렸음이 3명(3.4%), 금융기관 외 지인 등을 통해 빌림이 1명(1.1%), 시설 또는 위탁부모가 마련해줌이 5명(5.7%), 민간후원단체가 1명(1.1%), 근로소득이 29명(33.3%), 기타가 14명(16.1%)으로 근로소득이 가장 많았고, 자립정착금, 기타, 정부지원(영구 또는 LH(SH) 임대주택) 순이었다.

저연령(만18세~만23세)의 경우, 정부지원(영구 또는 LH(SH) 임대주택)이 7명(10.0%), 자립정착금이 16명(22.9%), CDA(디딤씨앗통장)가 5명(7.1%), 보호 중 발생한 후원금이 2명(2.9%), 친부모/형제/친인척이 무상으로 주었거나 빌려줌이 1명(1.4%), 시설 또는 위탁부모가 마련해줌이 15명(21.4%), 근로소득이 11명(15.7%), 기타가 13명(18.6%)으로 자립정착금이 가장 많았고, 시설 또는 위탁부모가 마련해줌, 기타, 근로소득 순이었다.



<표 4-21> 과거 거주했던 주거에 대한 자금 마련 방법 (중복응답 포함)

	연령구분	빈도(명)	퍼센트(%)
정부지원(영구 또는 LH(SH) 임대주택)	고	10	11.5%
	저	7	10.0%
자립정착금	고	14	16.1%
	저	16	22.9%
CDA(디딤씨앗통장)	고	3	3.4%
	저	5	7.1%
보호 중 발생한 후원금	고	3	3.4%
	저	2	2.9%
친부모/형제/친인척이 무상으로 주었거나 빌려줌	고	4	4.6%
	저	1	1.4%
금융기관에서 빌렸음	고	3	3.4%
	저	0	0.0%
금융기관 외 지인 등을 통해 빌림	고	1	1.1%
	저	0	0.0%
시설 또는 위탁부모가 마련해줌	고	5	5.7%
	저	15	21.4%
민간후원단체	고	1	1.1%
	저	0	0.0%
근로소득	고	29	33.3%
	저	11	15.7%
기타	고	14	16.1%
	저	13	18.6%
합계		157	100.0

주. 고 = 만 24세~만28세, 저=만18세~만23세



[그림 4-16] 과거 거주했던 주거에 대한 자금 마련 방법

8) 과거 거주했던 주거에 대한 임차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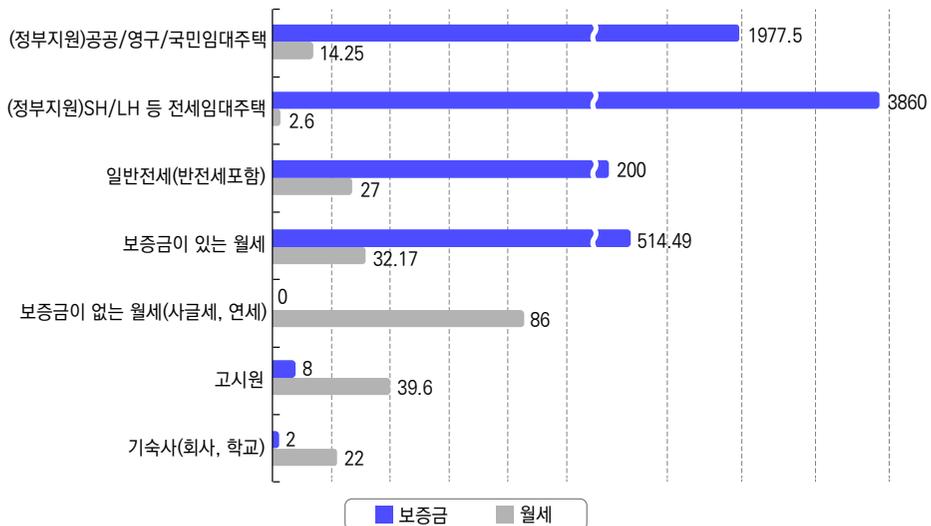
보호 종결 아동의 과거 거주했던 주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 <표 4-22>와 같다. 정부지원 중 공공, 영구,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한 경험이 있다에 응답한 경우, 보증금은 평균 1,977.50만원이었고, 월세는 평균 14.25만원, 관리비 평균 4.50만원이었다. 정부지원 중 SH, LH,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보증금 평균 3,860만원, 월세평균 2.60만원, 관리비평균 4.40만원이었다. 일반전세(반전세 포함)에 거주한 경험이 있다에 응답한 경우, 보증금 평균 200만원, 월세 평균 27만원, 관리비 평균 3만원이었고,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 평균 514.49만원, 월세 평균 32.17만원, 관리비평균 2.93만원이었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경우 월세 평균 86만원, 관리비평균 3.60만원이었고, 고시원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경우, 보증금 평균 8만원, 월세평균 39.60만원, 관리비는 1만원 수준이었으며, 기숙사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경우, 보증금 평균 2만원, 월세 평균 22만원이었다.



<표 4-22> 과거 거주했던 주거에 대한 임차료

(단위:만원)

		N	최소값	최대값	M	SD
(정부지원) 공공/영구/국민 임대주택	보증금	4	110	5000	1977.50	2321.64
	월세	4	0	37	14.25	17.50
	관리비	4	0	10	4.50	4.203
(정부지원) SH/LH 등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10	0	7000	3860.00	2909.45
	월세	10	0	11	2.60	3.78
	관리비	10	0	9	4.40	2.37
일반전세 (반전세포함)	보증금	1	200	200	200.00	.00
	월세	1	27	27	27.00	.00
	관리비	1	3	3	3.00	.00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	49	0	2500	514.49	526.11
	월세	49	2	75	32.17	10.98
	관리비	49	0	10	2.93	3.26
보증금이 없는 월세 (사글세, 세)	보증금	5	0	0	.00	.00
	월세	5	20	300	86.00	119.97
	관리비	5	0	14	3.60	6.07
고시원	보증금	5	0	40	8.00	17.89
	월세	5	30	53	39.60	8.56
	관리비	5	0	5	1.00	2.24
기숙사 (회사, 학교)	보증금	5	0	10	2.00	4.47
	월세	5	10	30	22.00	8.37
	관리비	5	0	0	.00	.000



[그림 4-17] 과거 거주했던 주거에 대한 임차료

9) 과거 주거임차료에 대한 부담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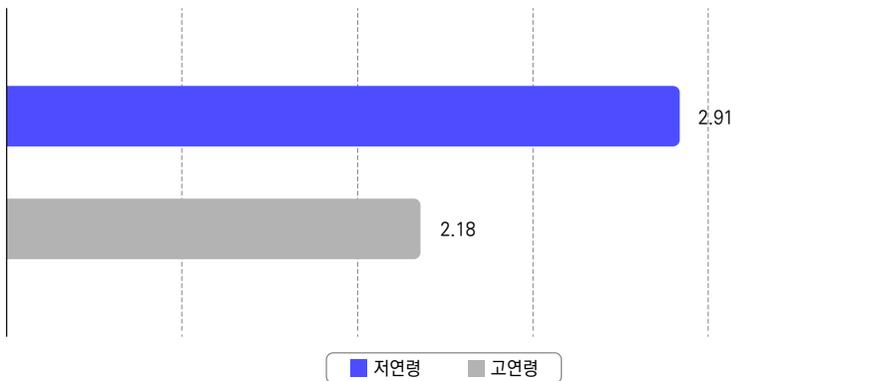
보호 종결 아동에 대하여 연령별, 성별에 따라 과거 주거임차료에 대한 부담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각 집단별로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23>과 같다. t-검증 결과 고연령과 저연령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저연령 집단이 고연령 집단보다 주거임차료 부담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에 따른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23> 과거 주거임차료에 대한 부담 정도

		구분	N	M(SD)	t값
주거임차료에 대한 부담		고연령	74	2.18(1.12)	-3.63***
		저연령	58	2.91(1.21)	
		남	70	2.57(1.21)	.717
		여	62	2.42(1.22)	

주. 고연령 = 만 24세~만28세, 저연령=만18세~만23세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4-18] 과거 주거임차료에 대한 부담 정도



10) 보호 종결 후, 현재까지 거주지를 옮긴 경험

보호 종결 이후, 현재까지 거주지를 옮긴 경험은 <표 4-24>와 같다. 거주지를 옮긴 경험이 있다가 전체 160명 중 111명(69.4%)으로 나타났으며,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30명(18.8%)로 나타났다.

<표 4-24> 보호 종결 후, 현재까지 거주지를 옮긴 경험 유무

	빈도(명)	퍼센트(%)
있다	111	69.4
없다	30	18.8
무응답	19	11.9
합계	16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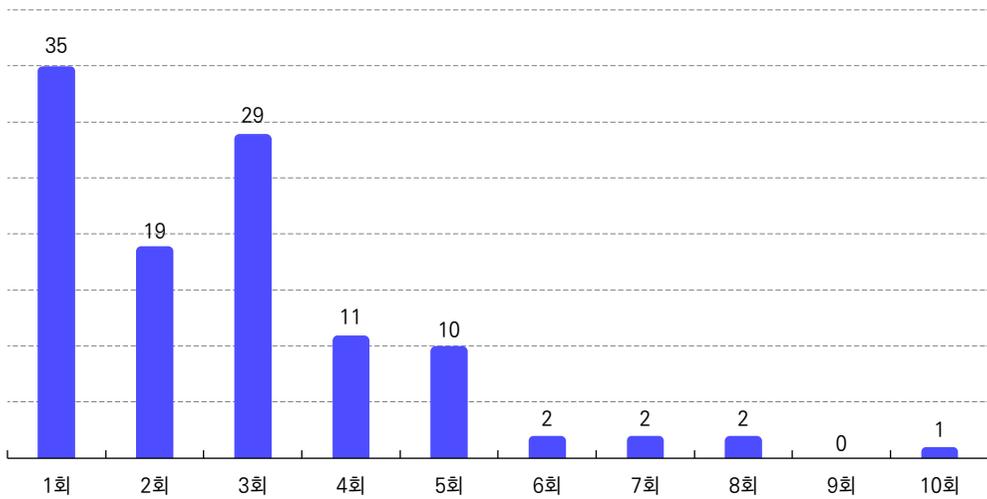


[그림 4-19] 보호 종결 후, 현재까지 거주지를 옮긴 경험 유무

보호 종결 이후, 현재까지 거주지를 옮긴 횟수에 대한 응답은 <표 4-24-1>과 같다. 옮긴 횟수가 1회인 경우는 35명(31.5%), 2회가 19명(17.1%), 3회가 29명(26.1%), 4회가 11명(9.9%), 5회가 10명(9.0%), 6회가 2명(1.8%), 7회가 2명(1.8%), 8회가 2명(1.8%), 10회가 1명(0.9%)으로 1회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회, 2회가 그 뒤를 이었다.

<표 4-24-1> 보호 종결 후, 현재까지 거주지를 옮긴 횟수

횟수	빈도(명)	퍼센트(%)
1	35	31.5
2	19	17.1
3	29	26.1
4	11	9.9
5	10	9.0
6	2	1.8
7	2	1.8
8	2	1.8
9	0	0.0
10	1	0.9
합계	111	100.0



[그림 4-20] 보호 종결 후, 현재까지 거주지를 옮긴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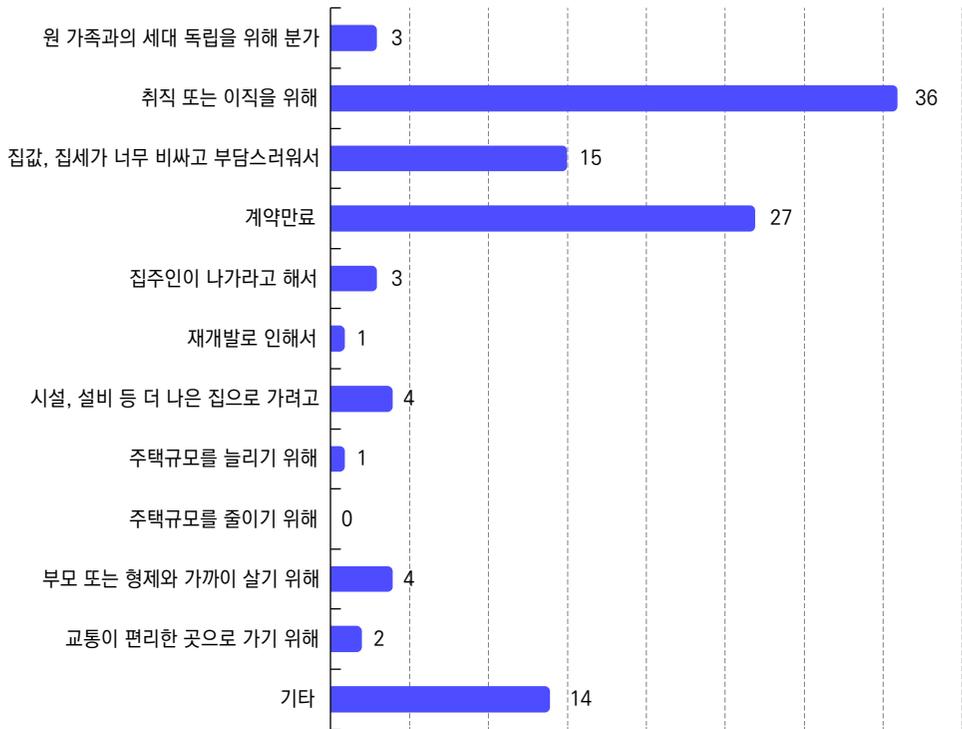
11) 과거 이사했던 이유

과거 이사를 경험한 이유에 대한 우선순위 응답은 <표 4-25>와 같다.

원 가족과의 세대 독립을 위해 분가가 3명(2.7%), 취직 또는 이직을 위해가 36명(32.4%), 집값, 집세가 너무 비싸고 부담스러워서가 15명(13.5%), 계약만료가 27명(24.3%),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가 3명(2.7%), 재개발로 인해서가 1명(0.9%), 시설, 설비 등 더 나은 집으로 가려고가 4명(3.6%), 주택규모를 늘리기 위해가 1명(0.9%), 부모 또는 형제와 가까이 살기 위해가 4명(3.6%),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가기 위해가 2명(1.8%), 기타가 14명(12.6%)으로 취직 또는 이직을 위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계약만료, 집값, 집세가 너무 비싸고 부담스러워서 순이었다.

<표 4-25> 과거 이사했던 이유(우선순위 응답)

	빈도(명)	퍼센트(%)
원 가족과의 세대 독립을 위해 분가	3	2.7
취직 또는 이직을 위해	36	32.4
집값, 집세가 너무 비싸고 부담스러워서	15	13.5
계약만료	27	24.3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3	2.7
재개발로 인해서	1	0.9
시설, 설비 등 더 나은 집으로 가려고	4	3.6
주택규모를 늘리기 위해	1	0.9
주택규모를 줄이기 위해	0	0.0
부모 또는 형제와 가까이 살기 위해	4	3.6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가기 위해	2	1.8
기타	14	12.6
무응답	1	0.9
합계	111	100.0



[그림 4-21] 과거 이사했던 이유

12) 보호 종결 이후의 주거관련 생활상 (주관식 응답)

보호 종결 이후의 주거관련 생활상에 대한 주관식 응답을 전반적으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퇴소 전 6개월의 경우, 시설에 거주하면서 취업이나 대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아동이 대부분이었다. 그 외에 시설이 아닌 위탁가정 혹은 자립생활관에 거주하는 아동도 있었으며, 원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도 있었다. 이미 취업을 하거나 대학에 진학하여 회사생활과 대학생살에 적응 중인 아동도 일부 있었다.

퇴소 후 6개월의 경우, 취업자는 대부분 월세방에 거주했고, 일부는 회사 내 기숙사에서 거주하였다. 대학 진학자의 대부분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기숙사에 거주했고, 자취를 하는 경우 주로 월세방에 거주하였다. 그 외에 지인의 집, 후원자의 집, 형제·자매의 집, LH 전세임대주택, 자립생활관에 거주하는 아동도 일부 있었다.



퇴소 후, 6개월~현재의 경우, 퇴소 후 6개월의 경우와 비슷했으나 이전보다 많은 아동이 LH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주거형태는 월세로 나타났다.

3. 신체 및 우울

1) 내가 생각하는 나의 건강상태

보호 종결 아동의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 건강상태는 <표 4-26>과 같다. 5점 척도로 질문하였으며(매우 나쁨=1점~매우 좋음=5점), 현재 나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균 3.39, 1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나의 건강상태는 평균 3.15, 같은 나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신의 건강상태는 평균 3.32로 나타났다.

<표 4-26> 내가 생각하는 나의 건강상태

	N	최소값	최대값	M	SD
현재 나의 건강상태는?	157	1	5	3.39	.92
1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나의 건강상태는?	157	1	5	3.15	1.01
같은 나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신의 건강상태는?	157	1	5	3.32	.98

2) 내가 생각하는 나의 우울상태

보호 종결 아동의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 나의 우울상태는 <표 4-27>과 같다. 질문은 매우 불만족(1점)에서 매우 만족(5점)까지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질문에 대하여 나의 인생에 만족합니까? 평균 3.27, 최근 활동이나 흥미가 떨어졌습니까? 평균 2.76, 인생이 텅 빈 느낌을 갖습니까? 평균 2.78, 가끔 지루하다고 생각됩니까? 평균 2.97, 대부분의 시간에 기분이 좋습니까? 평균 3.12,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 두렵습니까? 평균 2.58, 대부분의 시간이 행복합니까? 평균 3.15, 가끔 무기력하다고 느낍니까? 평균 3.02, 밖에 활동보다 그저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까? 평균 2.76, 살아 있어 좋다고 생각합니까? 평균 3.43, 현재 자신의 모습이 가치 없다고 느낍니까? 평균

2.47, 현재 자신은 힘이 넘친다고 느낍니까? 평균 3.01, 현재가 희망이 없다고 느낍니까? 평균 2.43,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보다 더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까? 평균 2.92로 나타났다.

<표 4-27> 내가 생각하는 나의 우울상태

	N	최소값	최대값	M	SD
나의 인생에 만족합니까?	157	1	5	3.27	.957
최근 활동이나 흥미가 떨어졌습니까?	158	1	5	2.76	1.04
인생이 텅 빈 느낌을 갖습니까?	158	1	5	2.78	1.10
가끔 지루하다고 생각됩니까?	157	1	5	2.97	1.03
대부분의 시간에 기분이 좋습니까?	158	1	5	3.12	.83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 두렵습니까?	158	1	5	2.58	1.02
대부분의 시간이 행복합니까?	157	1	5	3.15	.89
가끔 무기력하다고 느낍니까?	158	1	5	3.02	1.06
밖에 활동보다 그저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까?	157	1	5	2.76	1.10
살아 있어 좋다고 생각합니까?	158	1	5	3.43	.99
현재 자신의 모습이 가치 없다고 느낍니까?	157	1	5	2.47	1.00
현재 자신은 힘이 넘친다고 느낍니까?	158	1	5	3.01	.90
현재가 희망이 없다고 느낍니까?	157	1	5	2.43	1.00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보다 더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까?	157	1	5	2.92	1.05



4. 일반적 사항

보호 종결 아동의 성별은 남자가 79명(49%), 여자가 81명(51%)이었고, 연령은 저연령이 59명(37%), 고연령이 101명(63%)이었다. 현재 거주 지역으로는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가 40명(25%)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1명(13.1%), 부산이 19명(11.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37명(23.15%)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 32명(205), 대학교(4년제) 재학 또는 휴학 27명(16.9%) 순이었다. 집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부동산 이용이 93명(58.1%), 인터넷 30명(18.8%), 지인을 통해서 구한다 19명(11.9%)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152명(95%), 사실혼을 포함한 기혼이 4명(2.5%) 순이었다. 동거인은 없는 경우가 58명(36.3%), 형제자매 19명(11.9%), 친구 11명(6.9%)순으로 나타났다. 의료보장 형태는 건강보험(지역 및 직장가입자)이 99명(61.9%), 의료급여 1종 19명(11.9%), 의료급여 2종 12명(7.5%) 순이었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취업자(정규직)가 45명(28.1%), 취업자(비정규직) 31명(19.4%), 진학자(4년제, 대학원 포함)가 23명(14.4%)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67명(41.9%), 100만원 미만이 52명(32.5%), 소득없음이 22명(13.8%)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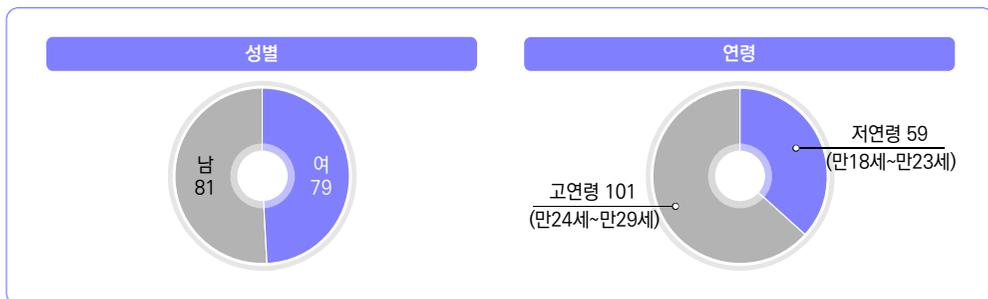
<표 4-28> 보호 종결 아동의 일반적 사항

		빈도(명)	퍼센트(%)
(전 체)		160	100
성별	남	79	49
	여	81	51
연령	저연령(만18세-만23세)	59	37
	고연령(만24세-만29세)	101	63
현재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40	25
	인천광역시	11	6.8
	광주광역시	8	5
	대구광역시	8	5
	대전광역시	7	4.4
	울산광역시	2	1.3
	부산광역시	19	11.9
	제주특별자치도	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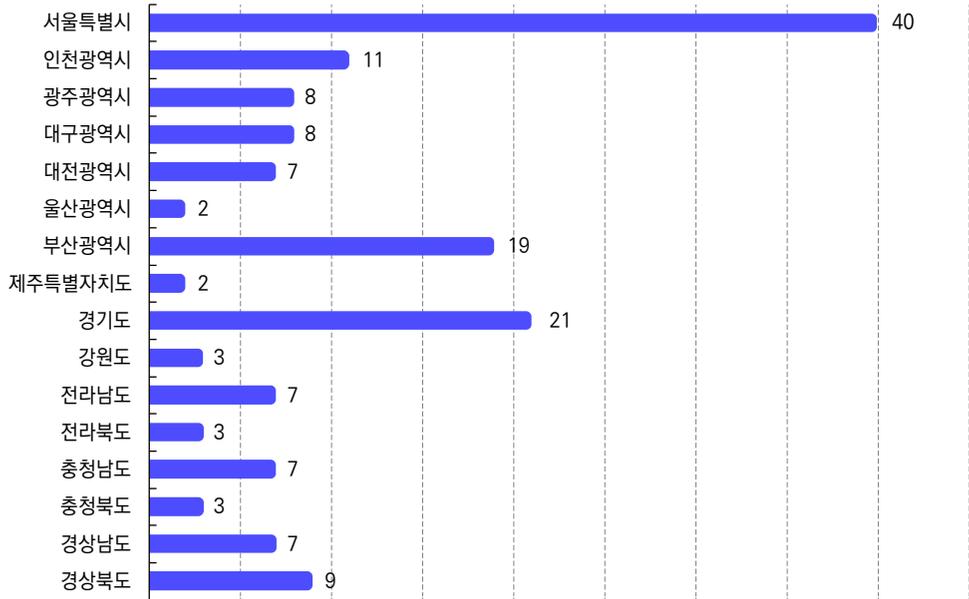
		빈도(명)	퍼센트(%)
(전 체)		160	100
경기도		21	13.1
강원도		3	1.9
전라남도		7	4.4
전라북도		3	1.9
충청남도		7	4.4
충청북도		3	1.9
경상남도		7	4.4
경상북도		9	5.6
무응답		3	1.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중퇴	2	1.3
	고등학교 졸업	32	20
	전문대(2~3년제) 재학	16	10
	전문대(2~3년제) 졸업	30	18.8
	대학교(4년제) 재학 또는 휴학	27	16.9
	전문대 또는 대학교 중퇴	7	4.4
	대학교(4년제) 졸업	37	23.1
	대학원 재학이상	9	5.6
집구하는 방법	부동산	93	58.1
	인터넷	30	18.8
	지인	19	11.9
	직접거래(전봇대 게시물 등)	9	5.6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직방 등)	3	1.9
	무응답	6	3.8
결혼상태	미혼	152	95.0
	기혼(사실혼 포함)	4	2.5
	무응답	4	2.5
동거인	배우자	4	2.5
	부	1	0.6
	모	4	2.5
	자녀	2	1.3
	형제자매	19	11.9
	친구	11	6.9
	기타	2	1.3
	없음	58	36.3
	무응답	59	36.9



		빈도(명)	퍼센트(%)
(전 체)		160	100
의료보장형태	건강보험(지역 및 직장가입자)	99	61.9
	의료급여 1종	19	11.9
	의료급여 2종	12	7.5
	기초생활수급자	2	1.3
	모름	7	4.4
	없음	4	2.5
	무응답	17	10.6
	현재 상황	취업자(정규직)	45
취업자(비정규직)		31	19.4
진학자(전문대)		14	8.8
진학자(4년제, 대학원포함)		23	14.4
취업준비중		20	12.5
아르바이트		16	10
기타		7	4.4
무응답		4	2.5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52	32.5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67	41.9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3	8.1
	300만원 이상	1	6
	소득없음	22	13.8
	기타	2	1.3
	무응답	3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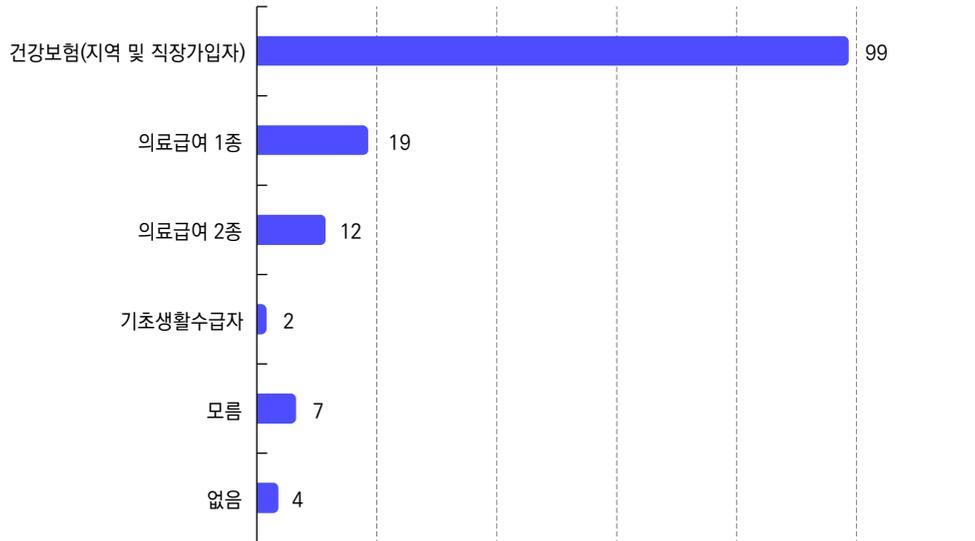
[그림 4-22-1] 성별 및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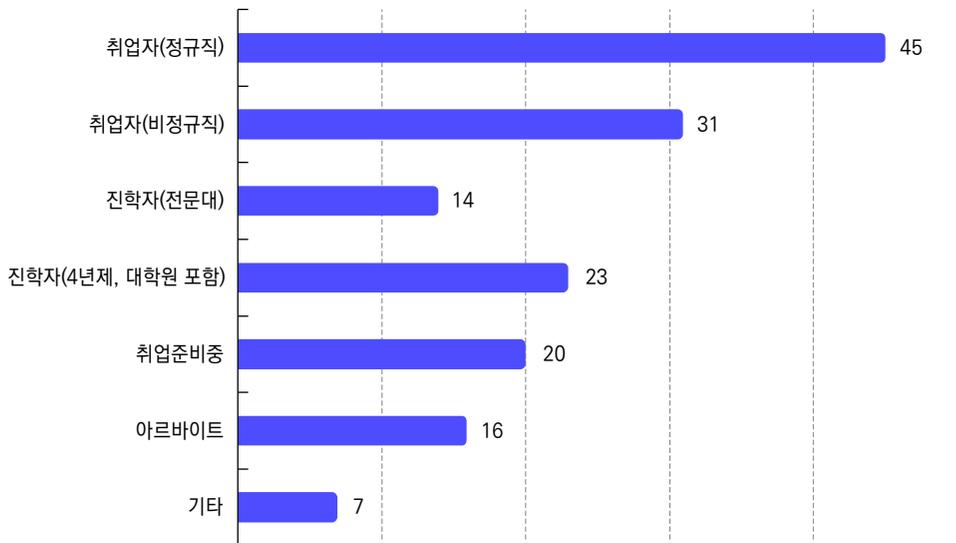
[그림 4-22-2] 현재거주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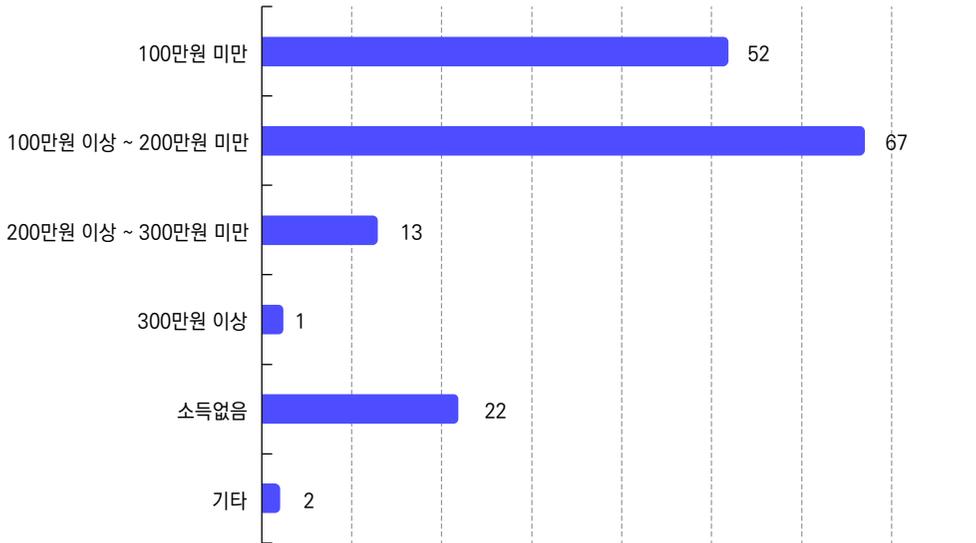
[그림 4-22-3] 집구하는 방법



[그림 4-22-4] 의료 보장 형태



[그림 4-22-5] 현재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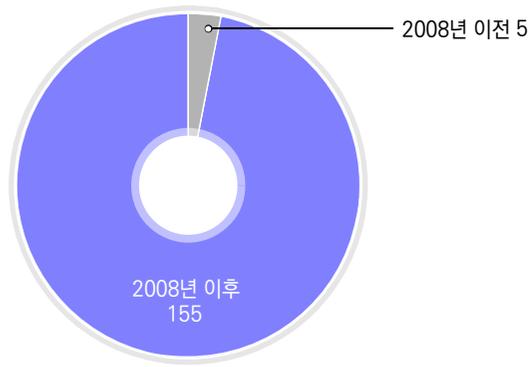
[그림 4-22-6] 월 평균 소득

보호 종결 년도의 경우 2008년 이전이 5명(3.1%), 2008년 이후가 155명(96.9%)으로 나타났다. 시설보호기간은 5년 이하가 58명(36.3%), 11년~15년이 40명(25%), 16년~20년이 35명(21.9%)으로 나타났다. 보호 종결 당시상황은 대학교 졸업 후 43명(26.9%), 대학진학 36명(22.5%), 대학교 재학 중 32명(20%) 순이었다. 보호 종결 시 지원금이 있다에 응답한 경우는 145명(2.5%), 없다에 응답한 경우가 10명(6.3%)이었고. 자립정착금은 300만원~500만원 이하가 78명(48.8%), 100만원~300만원 이하 42명(26.3%), 100만원 이하 4명(2.5%)으로 나타났다. 드림씨앗통장(CDA)은 100만원~300만원 이하 46명(28.8%), 100만원 이하 18명(11.3%), 300만원~500만원 이하 13명(8.15%) 순이었다. 후원금은 100만원 이하 18명(11.3%), 100만원~300만원 이하 11명(6.9%), 300만원~500만원 이하 3명(19.9%)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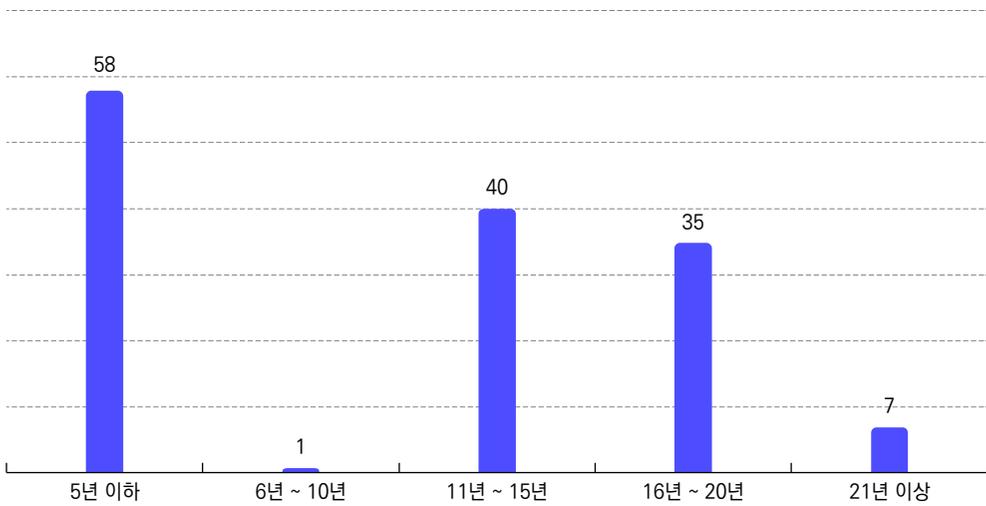


<표 4-29> 보호 종결 아동의 일반적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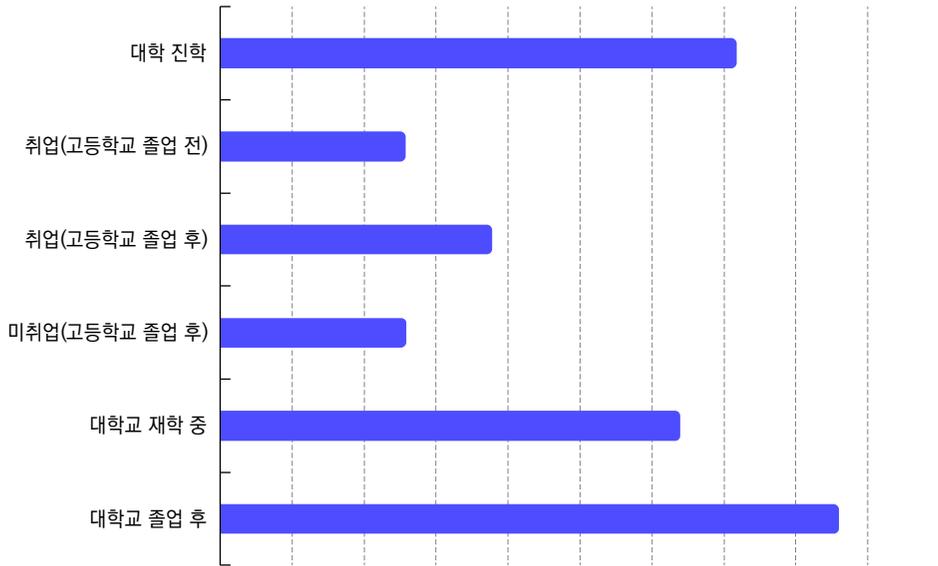
		빈도(명)	퍼센트(%)
(전 체)		160	100
보호 종결 년도	2008년 이전	5	3.1
	2008년 이후	155	96.9
시설보호 기간	5년 이하	58	36.3
	6년-10년	1	0.6
	11년-15년	40	25
	16년-20년	35	21.9
	21년 이상	7	4.4
	무응답	19	11.9
보호 종결 당시 상황	대학 진학	36	22.5
	취업(고등학교 졸업 전)	13	8.1
	취업(고등학교 졸업 후)	19	11.9
	미취업(고등학교 졸업 후)	13	8.1
	대학교 재학 중	32	20.0
	대학교 졸업 후	43	26.9
보호 종결 시 지원금	무응답	4	2.5
	있다	145	90.6
	없다	10	6.3
자립정착금	무응답	5	3.1
	100만원 미만	0	0.0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3	8.1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7	23.1
	500만원 이상	74	46.3
드림씨앗통장 (CDA)	무응답	36	22.5
	100만원 미만	14	8.8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3	26.9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4	8.8
	500만원 이상	8	5.0
후원금	무응답	81	50.6
	100만원 미만	11	6.9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5	9.4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4	2.5
	500만원 이상	4	2.5
	무응답	126	7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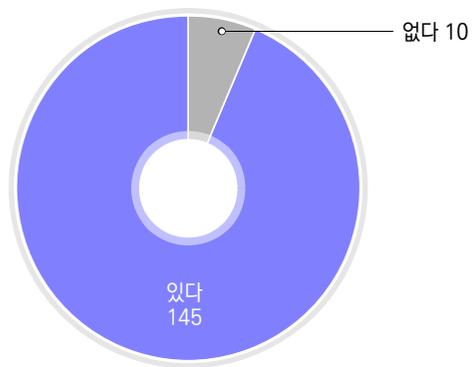
[그림 4-23-1] 보호 종결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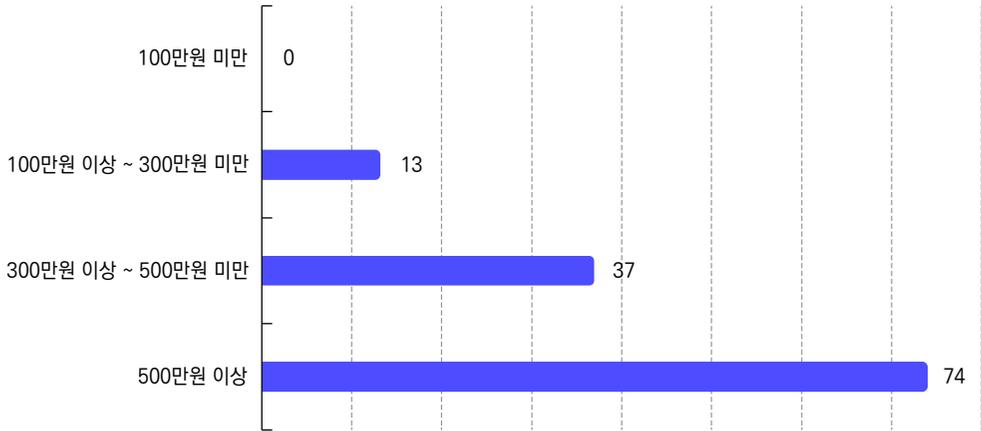
[그림 4-23-2] 시설 보호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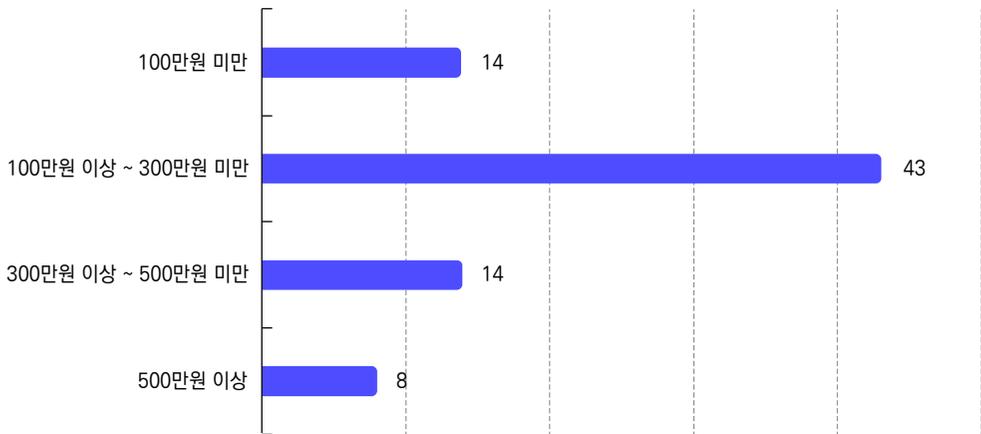
[그림 4-23-3] 보호 종결 당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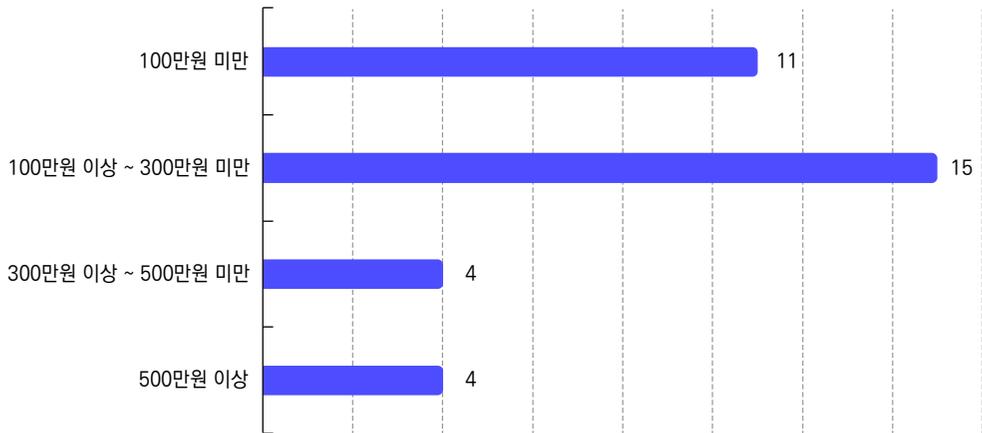
[그림 4-23-4] 보호 종결 시 지원금



[그림 4-23-5] 자립정착금



[그림 4-23-6] 드림씨앗통장(CDA)



[그림 4-23-7] 후원금

제2절 질적조사 결과

본 절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주거경험과 주거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사례연구(case study)를 통해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분할 수 있었다. 주제는 첫째, 주거서비스 경험 둘째, 주거정책의 이해 셋째, 주거지원사업의 장단점으로 구분하였다. 하위범주는 6개로 구분하였으며, 그에 따른 개념은 24개로 구분하였다.

<표 4-30> 주제별 범주화 및 개념화

개념	하위범주	주제
희망 속으로 마음의 여유 햇빛같은 존재	새로운 동아줄	주거서비스 경험
전세대란 갈등과 새로운 낙인 제도 속 비주류	현실의 벽	주거정책의 이해
수적인 증가 꿈의 공간 감사 그 자체 안도의 한숨	안정적인 나만의 공간	주거지원사업의 장단점
수요와 공급 미비한 정책 또다시 밖으로 정보제공의 적절성	나는 어디로	
자기개발 여유로운 생활 상식 LUCKY 스트레스 해소 제도 밖 한줄기 희망	나를 찾다	
접근의 한계 긴 기다림 더해주세요 지원 이후의 후유증	고마웠지만	



1. 주거서비스 경험

본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LH소년소녀가장주택, 영구임대주택, SH공사주택 등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본인들이 경험한 주거서비스에 대한 하위범주를 새로운 동아줄, 현실의 벽 등으로 구분하였다. 새로운 동아줄에는 희망 속으로, 마음의 여유, 햇빛같은 존재로 인식으로 구분하였다.

4년전 수급자 신청을 하고, LH전세임대(시설퇴소자유형) 신청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사는 LH에서 보증금을 지원받아 2,600만원에 월세 19만원을 내는 원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임대이자를 합쳐서 월24만원 정도로 이전보다 월세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이제 주거문제가 해결되고 돈을 모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참여자 1).

2012년경 서울권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주거지 고민으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보육원 출신 언니가 LH대학생임대주택이라는 사업을 소개해 주어서 2012년 2월부터 전세를 구해서 살게 되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참여자 2).

정부에서 선정이 되면서 제 마음에도 햇빛이 들었습니다. 10년간 지하 월세에서 지내다가 이제 지상에 그것도 전세에 입주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쁩니다(참여자 3).

대학교를 가면서 시설에서 자동연장이 되었어요. 연장이 되어서 전입신고를 하면 수급이 끊겨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LH 전세주택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좋았어요. 같이 대학 다니던 형들이 다 졸업을 하면서 시설에서 마련해 준 집도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정말 좋았어요. 정말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줄기 밝은 빛줄기를 보는 것 같았어요(참여자 4).

저희 시설은 연장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나가야 해요 -중략- 저는 아버지 따라 가서 지냈다가 아버지도 여유가 너무 없어서 제 자립정착금 다 생활비 쓰고, 저도 아르바이트 해서 살고 뭐 그러다가 시설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부교님을 만났는데, 부교님이 일단 아버지랑 사는 거 아니라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일단 나와서 부교님이랑 같이 후생원 졸업한 다른 한명이랑 같이 그 부교님 도움 받고 살았는데, -중략- LH 막판에 신청했다가 됐지요. 부교님 뵈기 너무 죄송했는데, 그때 어찌나 기뻐는지 저도 이제 사회 일원으로 살겠구나 했어요(참여자 5).

주거서비스 경험에 대한 두 번째 하위범주는 현실의 벽으로, 개념으로는 전세대란, 갈등과 새로운 낙인, 제도 속 비주류로 구분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제도 속에 혜택을 받는 주거서비스에 대한 고마움도 갖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장벽에 다시 한번 부딪히며, 다시 한번 좌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특히 2년정도 계약해서 살다보면, 집주인이 재계약 시점에 연락이 와서 LH로는 이제 계약하지 말고, 1000만원에 월세 40으로 계약하자고 하여, 그렇게 많은 월세비를 충당할 수 없는 저는 그 원룸을 나오기로 집주인분에게 말씀 드리고 학교 근처에 집을 계속 알아보았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차비를 아끼기 위해 학교 주변에 집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근처 대부분이 월세를 많이 받으려고 하시고, 전세권 설정도 해주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외각에 있는 방 한 칸짜리 아파트로 보증금 6000만원 월세 15만원 조건으로 계약을 하여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살고 이곳에서도 LH임대임자와 월세, 관리비를 합치면 30만원이 넘게 나와서 부담이 되지만, 학교 근처 원룸은 40~45만원 정도 가격 부담을 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당침의 기쁨도 잠시 ‘전세대란’이라고 불릴 만큼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참여자 1).

지방 또는 집이 가난한 사람들에게겐 LH 전세임대주택은 정말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처음 사업을 시작 할때는 집주인들의 인식도 좋았지만 현재는 - 중략- 하지만 막상 금액의 맞는 전셋집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였다(참여자 2).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얻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LH지원으로 집을 구하면 여러 서류를 요구하기에 집주인-중개업자-계약자 간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아 이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주거지원정책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LH지원으로 집을 구한다고 하기 전까지 집을 알아보면 적극적으로 중개업자가 나서서 집을 봐주셨지만, LH지원으로 집을 구한다고 이야기하면 중개업자 표정부터가 좋지 않았고, 성의 없는 태도도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LH 주택지원이 되는 곳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집을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참여자 3).

대학생일 때는 대학생으로 지원을 받으니까 괜찮았어요. 이후에 이제 소년소녀가장으로 지원을 신청하면, 일단 불쌍한 취급을 해요. 그리고 집주인분들도 그냥 고아라고 없인 여기서쇼. 또 주민센터 직원들도 그런 취급을 해요. 그래서 LH를 받았을 때 좋은 것을 모르겠어요. 그냥 수급자 취급 그게 싫어서 시설에서 마련해준 집에 더 오래 머물고 싶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4).

집 구하고 살고 있는데, 집이 너무 안 구해져서 반지하 구해서 살았는데, 정말 반지하 안 좋은 점도 하나도 몰라서 그냥 막 계약했다가 아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을 지경까지 집 상태가



갔어요. 그렇게 2년을 살고 마침 주인이 재개발을 해야 한다면서 계약해지 요청을 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집을 알아보는데, 역시나 반지하 외에는 집이 너무 안 구해지는거예요. 솔직히 7천 가지고 서울에선 반전세 아니면 구해지지도 않구요. 또 집주인들 부동산들 가면 LH인데요 하면 벌써 안색부터 싹 바뀌면서 안 구해주려고 하지요 그래서 스스로 집을 구하기 위해서 카페 같은데 이용했고 현재 그런 카페에서 구한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참여자 5)

2. 주거정책의 이해

현재 우리나라 주거관련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주제에 따른 하위범주는 안정적인 나만의 공간, 나는 어디로 등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안정적인 나만의 공간에서는 수적인 증가, 꿈의 공간, 감사 그 가치, 안도의 한숨 등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하위범주 두 번째인 나는 어디로에서는 수요와 공급, 미비한 정책, 또다시 밖으로, 정보제공의 적절성 등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현재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인 20, 30대 연령층들이 거주지가 안정되지 못해 대게 고시원이나 원룸 등에 거주하며 전용면적이 5-8평밖에 안되는 곳에서 비싼 월세를 지불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주거사업으로 저소득 가정에서 전세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사업 등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무척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수요량에 맞출 수 있는 공급량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예로 정부에서는 적정소득기준에 맞는 고령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그리고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시중 60-80%에 주거비로 입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시작단계라 현실적으로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에 대한 정책홍보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생계부담을 받고 있는 다양한 가정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참여자 1).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의·식·주 3가지가 제일 필요합니다. 그중 주거란 삶을 살아가는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거정책도 좋은 취지의 훌륭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취업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사업을 알았을 때는 이미 그 시기가 지나고 난 뒤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집을 알아보는 거 자체가 돈이 어느정도 모인 뒤에 자나요. 그때까지는 딱히 집을 알아보지 않아요. 기숙사가 있으니까 그니까 그때 되면 나이가 비슷하더라도 애들이 자기 나가서 살겠다고 집 찾아보는 시기랑 그 끝나는 시기랑 비슷하더라도요.

그래가지구 많은 애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한두명 있다고 들었어요. 저랑 안 친하지만 뭐 누가 이거 했는데 됐다더라는 식으로요(참여자 2).

우리나라 주거정책의 문제점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청약제도라는 것도 사실 돈이 있어야 회 차수를 늘려갈 수 있는 것인데, 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여유 없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거정책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또한 LH, SH 등 될 수 있는 집들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한 집들은 모두 선정하고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경험으로 내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한껏 들떴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지하 방 살이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집을 구하려고 하는 순간 막상 집이 없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선입견 및 무시를 당했었습니다. 모든 부동산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인성의 문제이겠지만 속상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거정책은 행복한 주거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 식, 주종 주가 기본이 되어야 다른 요소들도 채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정책발표를 하면, 그것에 대한 홍보를 널리하여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참여자 3).

저는 왜 홍보가 안됐을까 하는 생각은 못해봤고요. 아 이걸 내가 진작에 찾아보지 않았을까? 진작에 알아보지 않았을까? 정보 미흡이라는 걸 많이 느꼈지만 그거를 내가 안 찾아 본거에 귀인을 했지 왜 홍보가 안됐을까로 귀인시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설 복도에 한 장이라도 뭐 붙여놔면 좋았겠죠. 그 당시에는 말했다 시피 전혀 접할게 없잖아요. 내가 딴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있대 이렇게 하고 이 시설에서는 이런데 근데 왜 우리는 안하지? 이런 의문점이라도 가질법한데 그런 교류자체가 없었고 그런 교류가 시작된 건 이 시설을 나와서 보호종결 아동은 안됐지만 이 시설과 떨어져 살 때 들어온거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들이 되고 좀 이렇게 많은 거 같아요. 정보 미흡이 제일 많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어찌 되었든 국가에서도 있는 정책에 대해 홍보를 해서 많이 써 먹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딱히 안하네요(참여자 4).

일단, 퇴소할 때까지 그런거 와닿지가 않아요. 교육도 따로 없고, 자립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시긴 하지만 그냥 스쳐가는 이야기고, 아무튼 저는 처음에는 아버지가 절 데려가셔서 아버지랑 살게 되어서 더더욱이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절 데려간 곳이 모텔이었어요. -중략- 제가 갖고 있는 자립정착금 아버지랑 모텔 생활하면서 다 쓰고 아무튼 시설 친구랑 연락했는데, 개가 알려주더라고요. 너도 하면 된다고 -중략- 신청하고 거의 저 막바지에 다다라서 신청했거든요. -중략- 근데 집 얻는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구해지는데대로



막 아무것도 따지지 못하고 살았어요. -중략- 근데 또 이게 과정이 엄청 길어요 일단 통과되는데 두 달은 잡아야하고, 그거 되면 입주날짜랑 전입신고 뭐 맞추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깐 집주인들도 싫어하고 귀찮고 암튼 눈치 엄청 보여요(참여자 5).

3. 주거지원사업의 장단점

현재 연구대상자들은 2016년 실시한 시설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 주거안정 지원사업 대상자이다. 연구대상자들에게 주거안정지원사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질문 하였다.

하위범주는 나를 찾다, 고마웠지만 두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첫 번째 하위범주인 나를 찾다의 개념으로는 자기개발, 여유로운 생활, 상식, LUCKY, 스트레스 해소, 제도 밖 한줄기 희망 등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아동자립지원단에서 월세를 지원해주는 지원자 범위를 확대한 점이 2016년 주거안정 지원사업에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서울시에 사는 분들만 혜택을 받아서 지방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못 받았지만 2016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참여자 1).

1년 동안 월세를 지원받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적금의 금액도 높일 수 있고, 조금의 생활비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LH전세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값이 높은 서울에서 반전세를 구하고 살기에는 정말 힘이 들지만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정말 감사하고, 하나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참여자 2).

실제적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직접 지원해줘서 주거비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비용으로는 자기계발 및 활동의 기회로 이어져 본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만 28세까지 지원이 되어 보다 폭 넓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참여자 3).

저는 우와 이거 완전 팽잡았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니까 받는데 500만원이면요 지금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또 제가 생각하는 주거지원사업은요 우리가 도약할 수 있게 발판을 다져주는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단 디딤대가 제대로 있어야지 내가 도약을 할 수 있잖아요 디딤대를 잘 다져주는 역할인 것 같아요(참여자 4).

검정고시까지는 아니지만 원래 대학의 끈도 놓고 싶지 않았고, 공무원도 되고 싶기도 하고, 근데 공무원이랑 수능이랑 되게 겹쳐가지고, 과목이 그렇다고 마냥 생각만하고 있었는데,

주거지원 받으면서 학원에 그 돈 학원에 쏟아 부었네요. 자기계발비로 투자했는데, 그게 어찌나 좋던지요. 일단 그런 내가 쓸수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쓸 수 있게 돼서 좋았죠(참여자 5).

두 번째 하위범주인 고마웠지만에서는 접근의 한계, 긴 기다림, 더 해주세요, 지원 이후의 후유증 등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월세가 적은 사람들에게 월세뿐만 아니라 LH에서 납부하는 임대이자도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자만 십만원정도이고, 관리비등 합치면 34~35만원 가량 되기에 월세를 지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좋았지만 이자도 지원받았다면 주거비 부담이 거의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참여자 1).

딱히, 저는 보증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단점을 찾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월세로 지원을 받았다면 지원금이 끊기는 시점에서 경제적인 후유증이 남았을 것 같습니다(참여자 2)

혜택을 받은 자로써 항상 감사한 마음이지만 굳이 단점을 꼽자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지원금 지원이 늦은 편인 것 같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월세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한 달이라도 본인의 돈으로 내는 것보다 지원금으로 내면 훨씬 부담이 덜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주거관리교육과 재무상담설계의 경우,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교육이지만 단발성으로 끝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관리교육은 분기별 모니터링 혹은 재무상담설계는 지원 비다는 동안 한 달에 한번 등 횟수를 증가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참여자 3).

지원사업을 계속 받다보면 그런게 있어요. 지원을 받다보면 아이들이 또 시설에서 그런거 있잖아요. 많이 받다보면 너무 당연시 되는거죠. 시설병 그런게 많은거 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준비를 안하려고 해요. 계속 거기 수준에 머물러요 거기서 내가 아무것도 안해줘도 지원이 되고 편한데, 실제로 나도 그랬었고....-종략-(참여자 4)

처음엔, 지원 일정이 너무 길어서 짜증이 났죠. 그런데 이해해요 저만 받는게 아니라 몇십명을 한번에 줘야 하니깐 선생님들도 고충이 많으셨을 듯 해요. -종략- 그런데 지원이 종료됐을 때, 한 달 전쯤에 연락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저도 1년간 낫놓고 있던거 대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 종략- 웬지 긴 후유증에 시달릴 것만 같아요(참여자 5).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 양적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먼저 양적 조사에 대한 요약 및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 종결 아동의 현재 주거면적은 11-20㎡(3-6평)와 21-30㎡(6-9평)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본 조사의 조사대상과 같은 연령대(만 18세~만 28세)를 기준으로 2015년 10차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주거면적 부분 결과를 살펴보면 21-30㎡(6-9평)가 가장 많았고 30-40㎡(9-12평)가 그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시설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이 일반 아동보다 주로 더 좁은 주거면적에서 생활한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둘째, 현재와 과거 모두 주거임차료에 대한 부담이 저연령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24세 이하의 저연령 층의 경우 보호 연장, 대학생 기숙사 제공, 자립생활관 입소, 소년소녀가장 전세주택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는 고연령에 비해 저연령 층이 상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적 제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저연령 층의 주거 임차료 부담이 더 높았다는 결과와 더불어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서비스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가장 많은 응답이 주거관련 정보에 대한 홍보 확대에 나타남에 따라 현재 지원되는 정부정책 및 민간지원의 홍보방법이 적절한 지에 대한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보호 종결 아동의 대부분이 현재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보증금 평균은 520.25만원, 월세는 34.75만원으로 과거에 비해 각각 약 6만원, 2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주거실태연구⁵⁾에서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경우, 평균 보증금은 1,513.2만원, 평균 월세는 29.8만원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올라간다면 월세를 낮출 수 있지만 시설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의 경우 보증금을 올려 월세를 낮출 만한 여력이 되지 않아 평균 보증금이 520만원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5) 조사대상 : 현재 대한민국영토 중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반가구 및 이들의 거처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가구의 평균 보조금과 비교해 보았을 때 월세도 평균적으로 보호 종결 아동이 더 많이 내야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과거에 거주했던 주거환경 및 상태 만족정도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 및 상태 만족정도는 연령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조사 대상자 160명 중 85명이 현재 아름다운재단과 아동자립지원단이 지원하는 주거안정 지원사업 참여대상자인 것과 주거안정 지원사업의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이 455만원인 것을 감안해보았을 때, 과거에 해당 지원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들이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및 상태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2. 질적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시설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의 주거서비스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case study) 결과 요약과 이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첫 주거서비스 경험에 대하여 희망 속으로, 마음의 여유, 햇빛 같은 존재 등 3가지 개념과 새로운 동아줄이라는 한 가지 하위범주를 도출하였다. 2015년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아동자립지원단·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퇴소직후 아동들은 주거지마련, 생활비 마련 등의 문제가 가장 어렵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 참여자들 역시 퇴소 직후 안정적인 보호를 제공받았던 시설을 떠나 혼자 생활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았고, 다시금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불안을 경험하였다고 답하였다. 더불어 자립정착금을 오롯이 주거에 지출을 해야 한다는 점과 월세부담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감도 연구 참여자들의 불안을 더욱 높게 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처음 주거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연구 참여자들은 안정적인 공간을 제공받고, 월세보다 낮은 이자지출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 만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 참여자들은 주거서비스에 대한 혜택만족도는 높은 반면, 접근성과 선발과정에 대한 불만도 나타났다. 우선 정보제공 측면에서 이용당사자가 정보를 스스로 수집하고 알아봐야 한다는 점에서 불편함을 느꼈으며, 보호시설 내에 거주하면서 정확한 안내가



없었다는 홍보에 대한 적절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또한 3개월~6개월 정도 선발 과정에 비하여 실제 주거지를 선정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부여하여 주거지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지 못하고 금액에 맞는 집을 선택하게 된다는 단점도 나타났다. 이에 보호종결아동 관련 주거지원서비스의 홍보방법과 제공방법에 대한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주거정책의 이해에서는 전세대란, 갈등과 새로운 낙인, 제도 속 비주류 등의 부정적인 3가지개념, 현실의 벽이라는 한 가지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LH전세주택 혹은 타 국가주거서비스를 제공받은 연구 참여자들은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정해진 금액과 기간 안에 적절한 집을 구해야하며, 2년에 한번씩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반 세입자와는 다르게 제출해야 하는 추가서류 등의 사유로 입주를 거절당하고 스스로 사회적 비주류임을 낙인찍게 했다는 경험을 갖고 있었다. 이는 현행 주거지원제도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셋째, 주거지원사업의 장단점에서는 수적인 증가, 꿈의 공간, 감사 그 자체, 안도의 한숨, 수요와 공급, 미비한 정책, 또다시 밖으로, 정보제공의 적절성, 자기개발, 여유로운 생활, 상식, 럭키, 스트레스 해소, 제도 밖 한줄기 희망, 접근의 한계, 긴 기다림, 더 해주세요, 지원 이후의 후유증 등의 18가지 개념, 안정적인 나만의 공간, 나는 어디로, 나를 찾다, 고마웠지만 등 네 가지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민간 주거안정지원사업을 통하여 경제적인 안정과 스트레스에서는 자유를 얻었으나, 1년의 지원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지원이후의 후유증을 걱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주거지원서비스가 직접주거비만 해당하여 실제로 주거관련 지출에 필요한 관리비, 이자는 또다시 자신들의 부담이 되어 주거비 지원 영역 확대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더불어 정부와 민간이 협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주거서비스가 제공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CHAPTER

05



보호종결아동주거지원제도개선을위한주거권실태조사

결론

결론

본 장에서는 시설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 마련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양육시설 퇴소 아동 국가주거서비스 실효성 제고 필요

현재 우리나라 퇴소아동을 위한 주거서비스는 소년소녀가장전세임대주택, 대학생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이 있다. 국가에서 마련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본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약 30% 정도만 정부주거서비스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주거서비스의 실효성의 제고가 필요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현행 실시되고 있는 주거서비스의 경우 신청부터 선발, 입주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6개월~10개월가량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퇴소아동들이 정부주거서비스 신청 후, 임시거처를 마련해서 지내야 하며, 선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정을 경험하게 된다. 즉, 주거안정을 위해 신청한 사업으로 인하여 주거불안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주거서비스 수혜자로 선정이 되면 바로 거주 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정해진 기간에 거주지를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혜자들은 충분하지 않은 대출금액에 맞춰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주거문제 중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전세대란’ 속에서 정해진 기간에 적당한 집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어렵게 집을 구한 경우, 외부 편의시설(지하철, 슈퍼마켓 등) 및 내부 편의시설(수도시설, 난방시설, 방음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데 수혜자들이 과연 주거불안정에서 벗어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정부주거복지 수혜자로 선정되어 집을 구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로는 정신적인 어려움이다. 수혜자 선정 이후, 집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정부주거복지서비스 대상임을 밝혀 스스로 사회적 약자의 낙인을 찍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혜자들은 수치심 등의 경험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정부주거복지 서비스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참여율을 저조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정부주거서비스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자면 현재 수혜자로 선정되는 기간의 축소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현재 선정기간은 대략 1년 정도의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의 경우, 1년의 여유를 두고 주거지를 선정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합리적인 기간을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정 이후, 주거지 선택을 할 때 LH 등에서 주거지를 우선 확보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현재 방식은 수혜자 스스로에게 낙인을 찍고, 적합하지 않은 주거지를 선택하게 만들 요소들이 많다. 이에, 정부에서 주택을 확보하고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겠다.

본 연구 참여자들 중 아동 양육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의 경우, 퇴소를 앞두고 자립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제공받는 주거와 관련한 안내와 교육은 실질적이지 않고 실용 가능한 교육도 아니라고 인식하였다. 이는 현재 실시되는 양육시설의 주거관련 교육이 퇴소아동 개인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아닌, 획일화된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 참여자들이 국가주거서비스를 접한 경로는 본인 스스로가 제도적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함이었다고 하였으며,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국가주거서비스의 홍보물이나 기타 안내를 받은 경험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주거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접하는 방식에서는 이용경험이 있는 자립선배에게 문의 하거나, 자립전담요원 등을 통하여 정보를 확보했다고 하였다. 이에 국가주거서비스의 홍보방식의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책자와 홍보 리플렛 등을 보다 활발하게 배포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2. 퇴소 이후, 주거비 부담 해소방안 모색필요

퇴소아동들은 생애주기 상 청년층에 속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 이슈 중 가장 큰 화두는 청년층의 빈곤이다. 청년층의 빈곤이 발생하는 원인은 실업, 주거문제



등 경제적인 요소들이 적용된다. 특히,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주거는 소득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제이다. 즉, 소득활동이 힘든 청년층에게 주거빈곤은 어쩔 당연히 직면되는 과제인 것이다. 특히 만18세가 되면, 자립을 경험하게 되는 양육시설 퇴소아동의 경우, 실업 및 주거 빈곤의 체감도는 훨씬 빠를 것으로 사료된다. 퇴소아동의 경우, 퇴소 직후, 자립정착금과 아동발달계좌를 통한 지원금을 제공받게 된다. 자립정착금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많게는 500만원, 적게는 200만원을 제공받게 되며, 아동발달계좌의 경우는 시설에 거주했던 기간 및 시설 사정(후원금)에 따라 차등 지급받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퇴소 직후, 제공받는 자립정착금 및 아동발달계좌금액을 바탕으로 주거지를 구한 경험이 있으나 대부분의 퇴소 아동들은 실질적으로 주거지를 구할 때 턱 없이 부족한 지원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다. 실제 지원금을 통해 주거지를 구했다고 하여도 낮은 보증금으로 인하여 높은 월세비용을 감당하게 되며, 주거빈곤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이는 현재 퇴소아동 정책이 실질적 상황을 고려한 반영인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에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금의 지원 수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새로운 제도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 같은 제도적 개선의 모색은 퇴소아동의 시설병, 복지병을 유발한다기보다 다음 세대의 안녕을 위한 도약임을 인지하며, 해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주거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다양한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에서 퇴소아동의 주거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별적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관별 제공서비스의 공유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확대를 위하여 협의체나, 시스템의 개발 등을 통한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방법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현아, 신혜령, 박은미 (2009). 시설 퇴소청소년의 성인전환 단계에 따른 자립 및 사회적응 현황. 한국아동복지학, 30, 41-69.
- 권지성 (2007).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퇴소 후 생활에 대한 문화기술지. 아동권리연구, 11(1): 1-29.
- 권민희, 김재철, 김정윤, 한현철 (2015). 대학생 원룸 실태조사. 청년위원회.
- 김경희, 강현아, 안소영 (2009). 시설아동의 현황 및 쟁점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30(6).
- 김진희, 이상록 (2011). 빈곤, 주거환경, 이웃환경과 청소년발달의 구조적 관계. 청소년학연구, 18(5), 385-411.
- 김진희, 이상록 (2012). 빈곤과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주거환경, 이웃환경,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4(2), 365-387.
- 노승철, 이희연 (2009). 주거이동을 통한 주거 불안정성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4), 507-520.
- 박신영 (2012). 우리나라의 주거빈곤 실태. 보건복지포럼, 184(2012.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단 (2012). 아동양육시설 퇴소·연장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서울: 아동자립지원사업단.
- 유영립, 양영미, 박미현 (2015). 아동양육시설 퇴소 자립청소년의 준비에 대한 이해:생애사적 관점으로. 한국아동권리학회 19(3), 509-550.
- 윤영호 (2016). 맞춤형 주거정책과 주거서비스 산업분류체계. 한국주거학회지, 11(1), 23-26.
- 이봉주 (2014). 청년 주거문제를 둘러싼 재산권과 주거권 갈등. 도시와 빈곤, 107, 62-85.
- 이선민, 최병숙 (2014). 도·농지역 청소년의 물리적 환경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5(3), 73-83.



- 이용환 (2003).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의 취업실태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15개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5, 115-136.
- 전광섭, 김진, 이일호 (2011). 국내주거지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국부동산학회, 44, 79-93.
- 정선욱 (2010). 시설 퇴소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관련요인. 청소년학연구, 17(2), 233-252.
- 조춘범, 김미숙 (2016). 아동양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각 지자체별 차이연구. 공공정책연구, 33(1), 115-145.
-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2 상반기 기업체 신규인력 수요 실태조사. 서울:한국고용정보원.
- 홍인옥 (2007). 주거권 지표개발. 도시와 빈곤, 87, 102-122.
- UNICEF (2013).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SA:UN.

CHAPTER

07



보호종결아동주거지원제도개선을위한주거권실태조사

부록



2016 보호종결아동 주거제도 개선을 위한 주거권 실태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한 여러분의 실제주거현황과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기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여러분과 후배들이 보호 종결 후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만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본 설문지에 대한 응답에는 맞고 틀림이 없으므로 평소 귀하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응답이 더욱 귀중하고 가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읽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7일

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담당자 : 이정현 연구원, 이택호 연구원(02-2127-5911, 914)

연락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91 센트럴프라자 7층 (우. 04320)

☎ 02-2127-5911 / jarip@kohi.or.kr

구 분	내 용
응답자 유형	① 본인 ② 기타()
조 사 방 법	① 직접응답 ② 전화응답 ③ 이메일 ④ 기타()
조 사 일 시	_____년 _____월 _____일
조사원 성명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귀하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2016 보호종결아동 주거권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자 적격여부 및 보상물 제공 • 조사대상자 통계데이터 수집 및 처리 • 조사결과에 대한 자립지원정책 제언 및 정기적 실태조사 참여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정보] 성명, 보호종결여부, 보호유형, 전자우편주소, 연락처, 진학 및 취업정보, 주거정보, 정부지원현황, 소득 및 저축 등 경제정보, 자립지원금, 부채현황
보유기간	2016년 10월 ~ 2020년 9월(조사종료 후 4년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 연구사업 평가위원회 • 설문개발 및 데이터 취합기관 • 보상물 제공기관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관련 법령상 의무이행 • 연구사업 평가 및 결과보고 • 데이터 취합 및 보상물 제공 등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수집·이용할 항목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기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보유하지 못함
변경에 관한 사항	위 사항의 변경내용이 있을 시 변경 내용을 당사자에게 공지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3. 제공된 개인정보의 파기 안내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를 위해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달성 혹은 해당 정보 보유에 대한 불필요성이 인식 될 경우 **아동자립지원단은 지체 없이 영구 삭제함을 원칙**으로 하며 파기의 방법은 문서의 경우 파쇄, 전자 DB의 경우 복구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통해 원본 및 백업본을 파기함을 개인정보 제공자에게 공지합니다.

4.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의 신청·선발·지원 등과 같은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복지법, 생명윤리법 등 관련 법류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본인

성명 :

(인)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아동자립지원단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 손수복 주임 (☎ 02-2127-5903)

I. 주거실태

♣ 다음은 **현재 머무는 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하는 곳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유형은 무엇입니까?

- | | |
|--------------------|--------------------|
| ___ ① 영구/공공/국민임대주택 | ___ ② LH/SH 등 전세주택 |
| ___ ③ 자립지원시설 | ___ ④ 그룹홈 |
| ___ ⑤ 일반전세 | ___ ⑥ 보증금 있는 월세 |
| ___ ⑦ 보증금 없는 월세 | ___ ⑧ 자가 |
| ___ ⑨ 고시원 | ___ ⑩ 기숙사(회사, 학교) |
| ___ ⑪ 부모님이 사는 집 | ___ ⑫ 친구집 |
| ___ ⑬ 친척집 | ___ ⑭ 시설 또는 위탁가정 |
| ___ ⑮ 기타() | |

2.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위치는 어디입니까?

- | | |
|----------|--------------|
| ___ ① 지상 | ___ ② 반지하 |
| ___ ③ 지하 | ___ ④ 옥상(옥탑) |

3. 현재 거주하는 주거면적 및 구조는 어떻습니까?

※ 거실의 경우, 침실로 사용하거나 침실로 사용이 가능하면 방수에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주택 면적		<input type="text"/>	m ²
② 방	총	<input type="text"/>	개
③ 거실	총	<input type="text"/>	개
④ 화장실(목욕시설)	총	<input type="text"/>	개
⑤ 부엌	총	<input type="text"/>	개

7. 현재 살고 있는 주거환경에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가. 시장/대형마트/백화점 접근용이성	①	②	③	④
나. 병원(병의원/대학병원/기타의료시설) 접근용이성	①	②	③	④
다. 공공기관(시청, 읍/면/동사무소) 접근용이성	①	②	③	④
라. 문화시설, 공원 등 접근용이성	①	②	③	④
마. 대중교통 접근용이성	①	②	③	④
바. 주차시설 이용편의성	①	②	③	④
사. 주변도로의 보행 안전	①	②	③	④
아. 통학 혹은 출·퇴근 거리의 용이성	①	②	③	④
자. 치안 및 범죄 등 방범상태(CCTV 등)	①	②	③	④
차. 자동차 경적, 집주변의 소음정도	①	②	③	④
카. 청소 및 쓰레기 처리상태	①	②	③	④
타. 대기오염정도	①	②	③	④
파. 이웃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하.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①	②	③	④

8. 현재 살고 있는 주거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중복응답가능)

※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보 기
___ ① 정부지원(영구 또는 LH(SH) 임대주택)
___ ② 자립정착금
___ ③ CDA(디딤씨앗통장)
___ ④ 보호 중 발생한 후원금
___ ⑤ 친부모/형제/친인척이 무상으로 주었거나 빌려줌
___ ⑥ 금융기관에서 빌렸음
___ ⑦ 금융기관 외 지인등을 통해 빌림
___ ⑧ 시설 또는 위탁부모가 마련해줌
___ ⑨ 민간후원단체
___ ⑩ 근로소득
___ ⑪ 기타()



9. 현재 살고 있는 주거임차료는 얼마입니까?

※ 금액이 없는 경우, '0'원으로 응답하여 주세요

구 분	보증금	월세	관리비
가. (정부지원) 공공/영구/국민임대주택	만원	만원	만원
나. (정부지원) SH/LH 등 전세임대주택	만원	만원	만원
다. 일반전세(반전세포함)	만원	만원	만원
라. 보증금이 있는 월세	만원	만원	만원
마. 보증금이 없는 월세(사글세, 연세)	만원	만원	만원
바. 자가	만원	만원	만원
사. 고시원	만원	만원	만원
아. 기숙사(회사, 학교)	만원	만원	만원

10. 현재 주거임차료에 대한 부담은 어느정도입니까?

매우부담	부담	부담없다	전혀 부담없다
①	②	③	④

11. 현재 거주지와 관련한 부채가 있습니까?

___ ① 예(☞11-1로 이동) ___ ② 아니오

11-1. 주택관련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단 주택구입비, 보증금, 증개축 비용만 포함됨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은 것은 제외)

_____만원

12. 앞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 실제, 계획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___ ① 예(☞12-1로 이동)

___ ② 아니오

12-1. 어떤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입니까?

___ ① 지역이동 없음

___ ② 타 지역으로 이동

12-2. 이사를 계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 ① 원가족과의 세대 독립을 위해 분가

___ ② 취직 또는 이직을 위해

___ ③ 집값, 집세가 너무 비싸고 부담스러워서

___ ④ 계약만료

___ 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___ ⑥ 재개발로 인해서

___ ⑦ 시설, 설비 등 더 나은 집으로 가려고

___ ⑧ 주택규모를 늘리기 위해

___ ⑨ 주택규모를 줄이기 위해

___ ⑩ 부모 또는 형제와 가까이 살기 위해

___ ⑪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가기 위해

___ ⑫ 기타()

13. 현재 이용한 적이 있는 주거복지 관련 사업이 있습니까?(중복응답 가능)

구 분	있다	없다
가. 영구임대주택	①	②
나. 공공(국민)임대주택	①	②
다. 전세자금(용자)지원(저소득/근로자/서민)	①	②
라. 저소득층 월세지원(※지자체 사업 포함)	①	②
마. 주택구입자금(용자)지원(근로자/서민)	①	②
바. 아동자립지원단 주거안정 지원사업	①	②
사. 기타(직접기재:)		



19. 과거 주거상태에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가. 집의 구조물(건고, 균일상태)	①	②	③	④
나. 방수상태(습기, 빗물새는 정도)	①	②	③	④
다. 난방상태	①	②	③	④
라. 환기상태(창문개폐여부, 통풍상태)	①	②	③	④
마. 채광상태	①	②	③	④
바. 방음상태(층간소음 등)	①	②	③	④
사. 재난, 재해(산사태, 홍수 등) 안정성	①	②	③	④
아. 화재로부터의 안정성(화재대피시설)	①	②	③	④
자. 주거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①	②	③	④
차. 집 내·외부의 청결상태	①	②	③	④

20. 과거 주거시설 종류와 사용형태를 응답해 주십시오

종류	사용형태		
가. 상·하수도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③ 시설없음
나. 부엌	① 단독사용-입식	② 단독사용-재래식	③ 공동사용-입식
	④ 공동사용-재래식	⑤ 시설없음	
다. 화장실	① 단독사용-입식	② 단독사용-재래식	③ 공동사용-입식
	④ 공동사용-재래식	⑤ 시설없음	
라. 목욕시설	① 단독사용-온수가능	② 단독사용-온수불가능	③ 공동사용-온수가능
	④ 공동사용-온수불가능	⑤ 시설없음	
마. 난방시설	① 연탄 또는 재래식	② 연탄보일러	③ 나무·석탄보일러
	④ 기름보일러	⑤ 가스보일러	⑥ 전기보일러
	⑦ 중앙난방(지역난방)	⑧ 전기장판	⑨ 기타()

21. 과거 주거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중복응답가능)

※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보 기	
___ ①	정부지원(영구 또는 LH(SH) 임대주택)
___ ②	자립정착금
___ ③	CDA(디딤씨앗통장)
___ ④	보호 중 발생한 후원금
___ ⑤	친부모/형제/친인척이 무상으로 주었거나 빌려줌
___ ⑥	금융기관에서 빌렸음
___ ⑦	금융기관 외 지인등을 통해 빌림
___ ⑧	시설 또는 위탁부모가 마련해줌
___ ⑨	민간후원단체
___ ⑩	근로소득
___ ⑪	기타()

22. 과거 주거임차료는 얼마입니까?

※ 금액이 없는 경우, '0'원으로 응답하여 주세요

구 분	보증금	월세	관리비
가. (정부지원) 공공/영구/국민임대주택	만원	만원	만원
나. (정부지원) SH/LH 등 전세임대주택	만원	만원	만원
다. 일반전세(반전세포함)	만원	만원	만원
라. 보증금이 있는 월세	만원	만원	만원
마. 보증금이 없는 월세(사글세, 연세)	만원	만원	만원
바. 자가	만원	만원	만원
사. 고시원	만원	만원	만원
아. 기숙사(회사, 학교)	만원	만원	만원

27. 보호종결 이전과 이후, 주거와 집을 구할 때 도움을 준 사람과 어려웠던 점을 자세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II. 신체 및 우울

♣ 다음은 주관적 건강과 우울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가장 가깝다고 느끼시는 응답을 선택해 주십시오(현재기준).

27. 내가 생각하는 나의 건강상태는?

구분	매우나쁨	나쁨	보통이다	좋음	매우 좋음
가. 현재 나의 건강상태는?	①	②	③	④	⑤
나. 1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나의 건강상태는?	①	②	③	④	⑤
다. 같은 나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신의 건강상태는?	①	②	③	④	⑤

28. 내가 생각하는 나의 우울상태는?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이다	만족	매우 만족
가. 나의 인생에 만족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나. 최근 활동이나 흥미가 떨어졌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다. 인생이 텅 빈 느낌을 갖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라. 가끔 지루하다고 생각됩니까?	①	②	③	④	⑤
마. 대부분의 시간에 기분이 좋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바.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 두렵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사. 대부분의 시간이 행복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아. 가끔 무기력하다고 느낍니까?	①	②	③	④	⑤
자. 밖에 활동보다 그저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이다	만족	매우 만족
차. 살아 있어 좋다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카. 현재 자신의 모습이 가치 없다고 느끼 니까?	①	②	③	④	⑤
타. 현재 자신은 힘이 넘친다고 느끼니까?	①	②	③	④	⑤
파. 현재가 희망이 없다고 느끼니까?	①	②	③	④	⑤
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보다 더 좋은 상 황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Ⅲ. 일반적 사항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을 묻는 질문입니다.

※ 다음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V**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출생년도(연령)	_____년 출생(만__세)	
3. 현재 거주 지역 (현주소지)	_____ (예: 서울특별시)	
4. 최종학력	① 중학교 졸업이하 ③ 고등학교 졸업 ⑤ 전문대(2-3년제) 졸업 ⑦ 전문대 또는 대학교 중퇴 ⑨ 대학원 재학이상	② 고등학교 중퇴 ④ 전문대(2-3년제) 재학 ⑥ 대학교(4년제) 재학 또는 휴학 ⑧ 대학교(4년제) 졸업
5. 보호 종결 년도	① 2008년 이전(_____년도) ② 2008년 이후(_____년도)	

